

2021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DAY



ConsMa 2021
Construction Management

제9회 CM서울포럼

The 11th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Day

The 9th CM Seoul Forum



한국CM협회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International
project
management
association



제11회

세계CM의 날

제9회 CM서울포럼

일 시 2021. 4. 8(목) 14:00 ~ 16:40

온라인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생중계

참석대상 CM에 관심이 있는 사전 참가 신청자

현장참가 법무법인(유) 율촌 렉처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9층)

국토교통부 관계관, 주제발표자,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주 관 한국CM협회, 법무법인(유) 율촌

후 원 국토교통부, 국회CM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제9회 CM서울포럼

- CM 산업의 미래변화와 대응과제 / 한국건설관리학회 정영수 회장
- 시공사가 본 건설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 (주)대우건설 정명호 프리콘팀장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 법무법인(유)율촌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유)율촌 이동현 선임노무사
- 업역 개편 / 국토교통부 김석원 건설정책과 사무관

문의전화 한국CM협회 천금자 실장 ☎ 02-585-7092

제11회 세계CM의 날 기념식

- 기념사 및 축하
- 정부포상
- 축하 영상메세지 상영

Contents

■ CM 산업의 미래변화와 대응과제 1

한국건설관리학회 정영수 회장

■ 시공사가 본 건설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31

(주)대우건설 정명호 프리콘팀장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65

법무법인(유)울촌 정유철 변호사, 이동현 선임노무사

■ 업역 개편 131

국토교통부 김석원 건설정책과 사무관



CM 산업의 미래변화와 대응과제

한국건설관리학회

정영수 회장

Profile

Education

- 1997 Univ. of Texas at Austin 공학박사 (PhD, 건설관리전공)
- 1993 Univ. of Texas at Austin 공학석사 (MSE)
- 1985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BS)

Professional Experience

- 2000~현재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2019~현재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 2019~현재 국가기술표준원 산업데이터 전문위원
- 1998~200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1994~1998 쌍용건설(주) 과장
- 1985~1990 GS건설(주) 사원/대리

정영수 교수/PMP



Tel: +82-10-3135-6396
E-mail: yjung97@mju.ac.kr

Representative Matters

- 2017 유럽 CIB 도서 공저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 2015 북미 ASCE 도서 공저 (BIM)
- 2011 Elsevier 발표논문, Sciencedirect Top 25 1위 선정 (2011년 18개월 연속)
- 2011~2026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_건설 정보화 연구책임자
스마트팩토리 자산관리, 건설 빅데이터 표준기반, 원전건설 경험지식추론
BIM 통합객체분류, 건설프로젝트 진도관리자동화
- 2010~2021 국토교통부 연구과제_신한옥 통합 설계시공 시스템 연구 세부책임자
대공간 한옥 설계시공, 신한옥 핵심기술 고도화, 신한옥 통합관리 표준화
- 1995~2000 과학기술부 연구과제_건설프로젝트 관리기술개발 (CIC)

CM 산업의 미래변화 및 대응과제

Issues and Needs towards Future CM

정영수, 명지대학교

제 11회 세계 CM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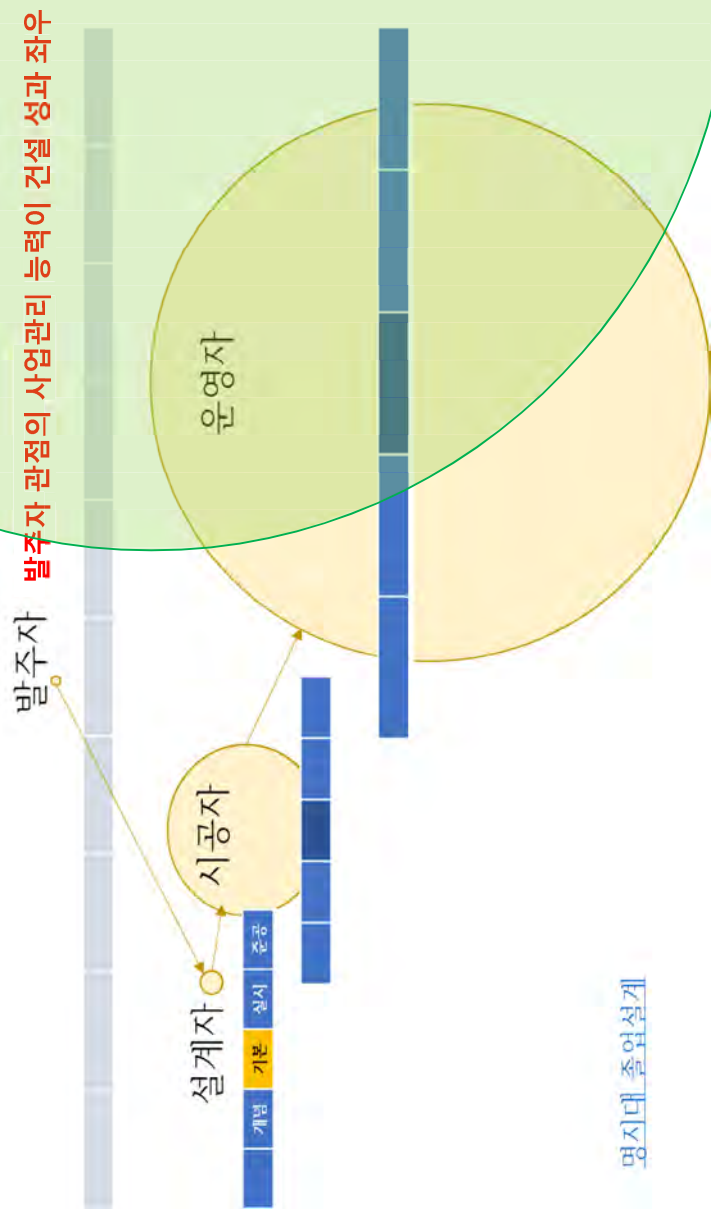
2021. 04.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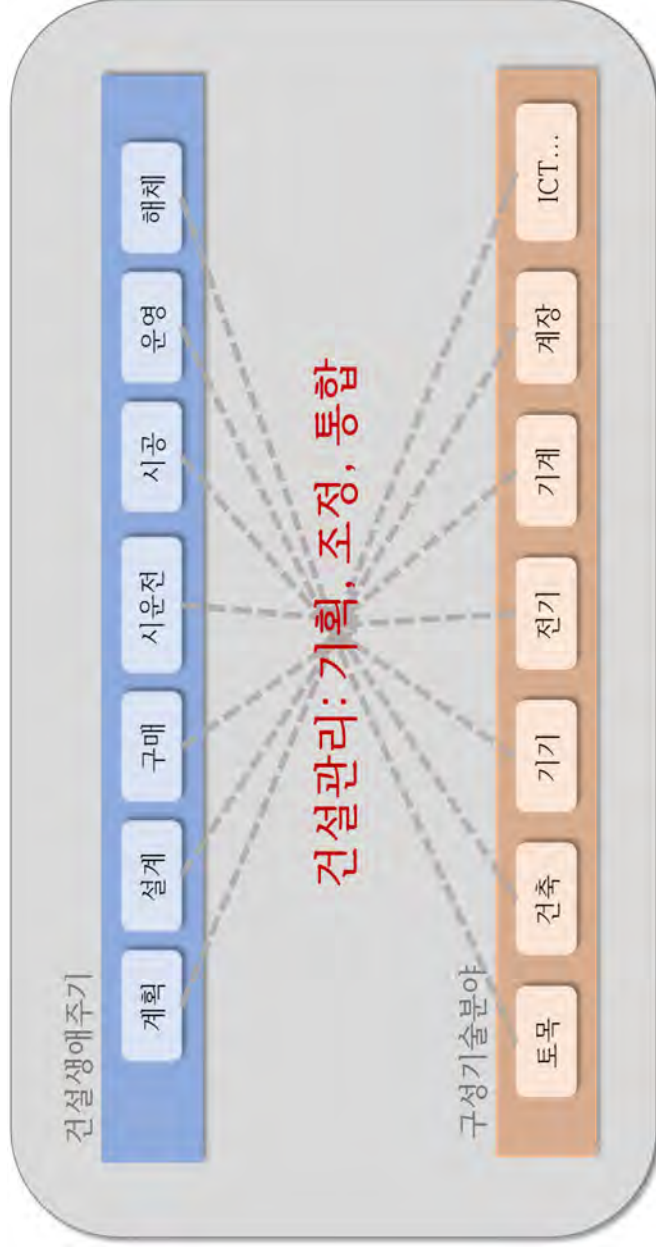
✓ 건설사업관리 (by Myongji Univ.)

- ✓ Construction Management is
 - the activities of **planning,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 all relevant **business functions** (e.g., 14 biz functions by Jung and Gibson 1999)
 - throughout the entire **project life cycle**
 -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 terms of quality, cost, time, and value
 - of the facility, program, or portfolio.
- ✓ Facility
 - includes civil, building, housing, and industrial plant
- ✓ Performed by
 - all of the owners, engineers, equip suppliers, constructors, and operators

✓ 건설단계 노력과 파급효과



✓ 건설사업관리 (by Myongji Univ.)



✓ 생애주기와 업무기능

업무기능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운영	해체
기획	기획+설계+시공+운영 외주						
영업							
설계							
전적							
공정관리							
자재관리							
계약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일반관리							
연구개발							

* 건설업무기능 분류는 Jung & Gibson (1999)에 따름

✓ 시스템엔지니어링 (by wikipedia)

- ✓ System engineering (SE) is an interdisciplinary field of
 - ✓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anagement that focuses on
 - ✓ how to design and manage complex systems over their life cycles (Wikipedia)
- ✓ System of systems is a collection of task-oriented or dedicated systems
 - ✓ that pool their resources and capabilities together
 - ✓ to create a new, more complex system
 - ✓ which offers more functionality and performance
 - ✓ than simply the sum of the constituent systems (Wikipedia)

✓ 시스템엔지니어링 **Body of Knowledge** (SEBok by www.sebokwik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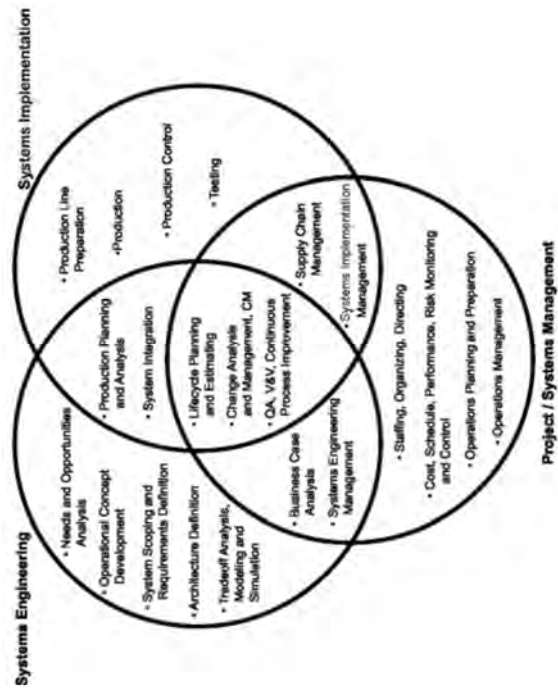


Figure 3. System Boundaries of Systems Engineering, Systems Implementation, and Project/Systems Management.
(SEBok Original)

건설산업 환경변화

환경 변화: 공유, 표준, 그리고 4차 산업

✓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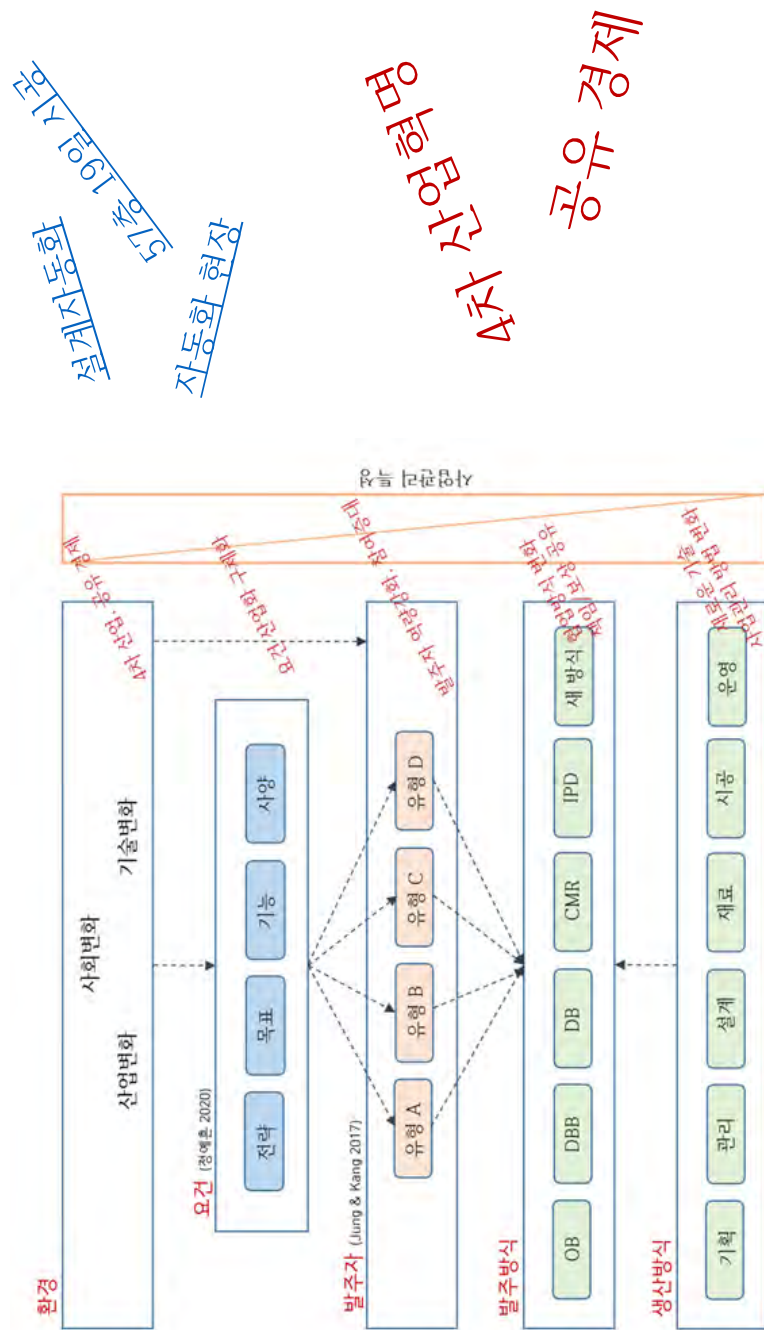
- 시설 사용 공유: 플랫폼 기업의 건설 진출
- 발주 성과 공유: 발주 방식의 다양화, 책임과 권한의 공유 (대안 발주방식 확산)
- 생산 과정 공유: Off-site constr. (OSC), 현장 장비, 현장 관리 기능
- 시설 사용 - 발주방식 - 생산방식

✓ 표준

- 사회/경제/관리/기술의 조직내, 조직간, 국가간 표준 활용
- 생태계 내의 관리기법, 업무방법, 자료공유 표준의 활용 증대
- 발주자 주도의 표준 활용 증가 (증가의 사례?)

✓ 4차 산업

-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
-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치인터넷, 로봇, 드론, 인공지능
- 건설산업 참여의 확장 필요 (확장의 의미?)



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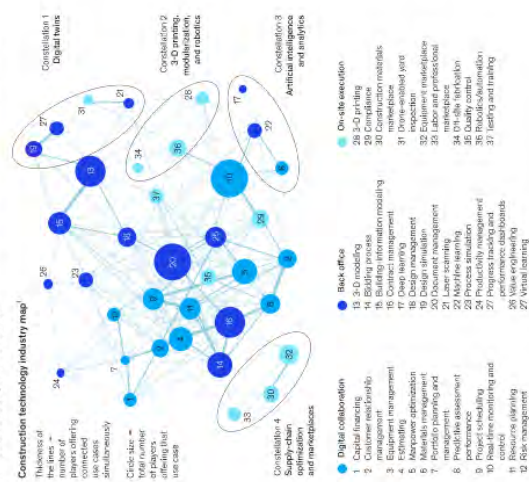
플랫폼 시대의 건설 (McKinsey; Pulkka et al. 2016)

Construction tech in the platform era

In 2016, we first assembled multiple data sets and employed advanced analytics to map the global construction technology industry ecosystem. We recently refined our analysis and found that the largest clusters of use cases include 3-D printing, modularization, and robotics; digital-twi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analytics; and supply-chain optimization and marketplaces (Exhibit 1).

Exhibit 1

The largest construction industry clusters of use cases include 3-D printing, modularization, and robotics.



McKinsey & Company

McKinsey & Company

Business Ecosystem: from the one large focal point (Moore 2006)

Platform Ecosystem: shared tech, standards, assets (Thomas et al. 2014)

Innovation Ecosystem: similar to biz ecosystem, but focused on innovation (Ritala et al. 2015)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34(2), 129-144.

Pulkka, L., Reinhard, M., Rajadillo, K., & Junttila, S. (2016). Applicability and benefits of the ecosystem concep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351개 사업의 발주자 자료 분석 평가 (Konchar and Sanvido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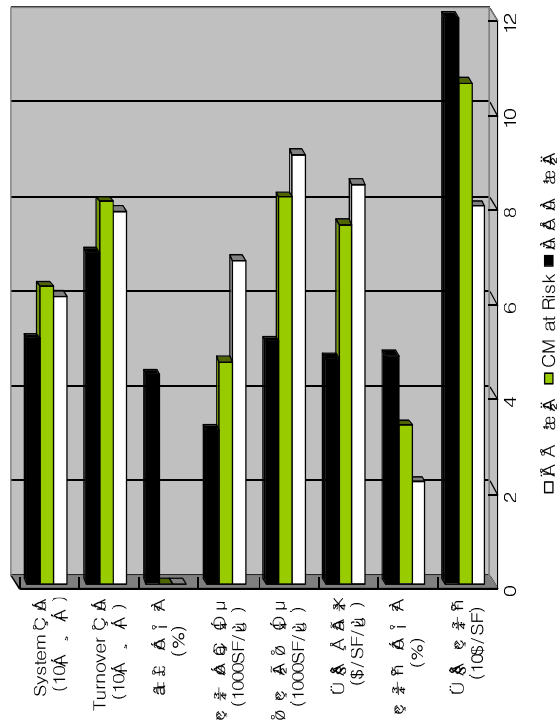


Figure 4.3. Public/Private Analysis of Metrics

< or > Significant difference called out ○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ystems ● Significant dif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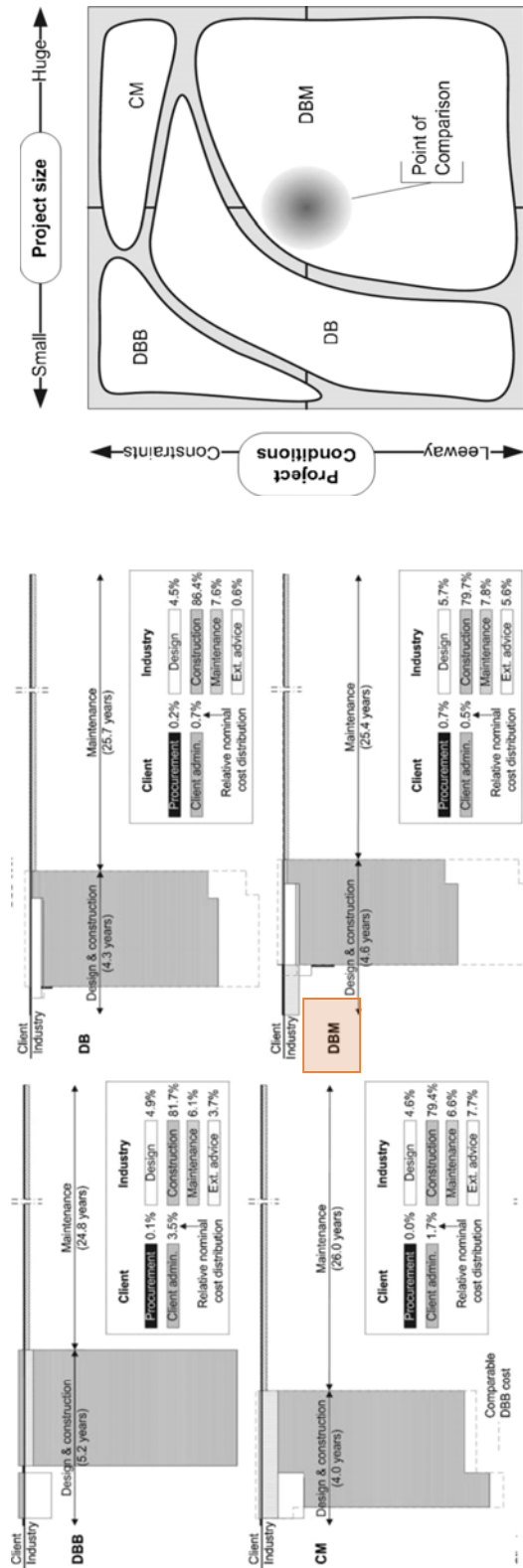
Family	Attribute	Unit Price	Cost Growth	Schedule Growth	Construction Speed	Delivery Speed	Intensity	Turnover	System	Equipment
Light Manufacturing	DB, CMR < DBB	DB, CMR > DBB	CMR < DB, DBB	DB, CMR > DBB	DB, CMR > DBB	DB, CMR > DBB	DB > DBB	DB > DBB	DB > DBB	
Multi-story Dwelling							DB > DBB			
Simple Office			CMR < DBB	CMR < DBB	CMR > DBB	CMR > DBB	DB > DBB	CMR > DB, DBB	DB > DBB	
Complex Office			DB < DBB	DB < DBB			DB > DBB	DB > DBB	DB > DBB	DB > DBB
Heavy Manufacturing										
Technology			DB > DBB				DB > DBB	DB, CMR < DBB	DB > DBB	

Note: When using to assist in project delivery system selection, the user should utilize the Project Data Sheets.

Figure 4.4. Summary of Significance by Family Grou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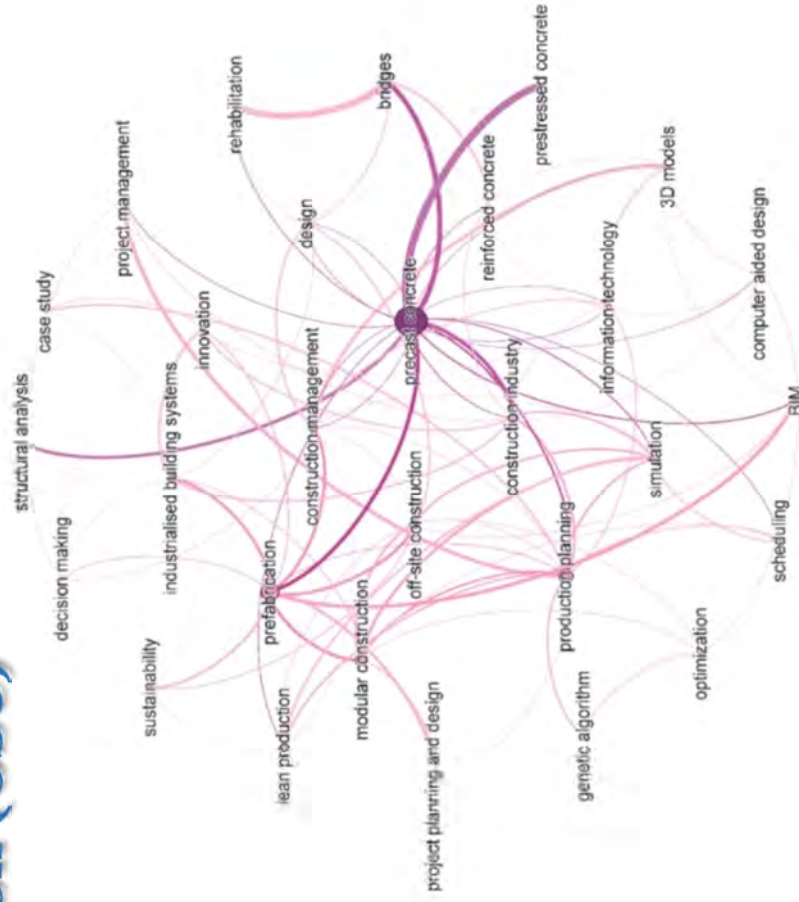
Konchar, M. and Sanvido, V. (1998). "Comparison of U.S. Project Delivery System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ASCE, 124(6), 435-444.

66명 전문가 분석 평가 (Koppinen and Lahdenpera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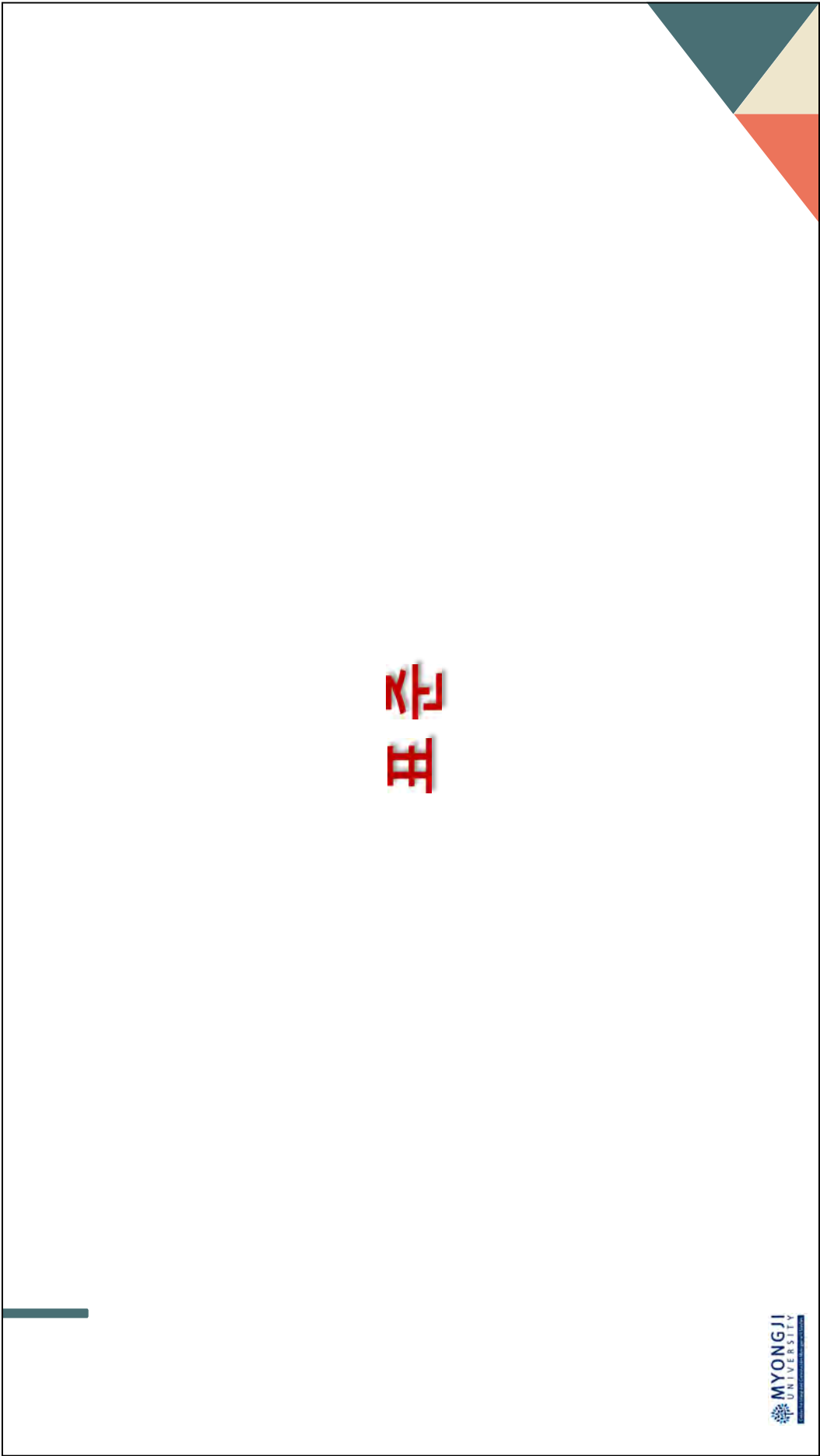


Koppinen T. and Lahdenpera, P. (2007). "Realized Economic Efficiency of Road Project Delivery Systems", Journal of Infrastructure Systems, ASCE, 13(4), 321-329.

주제어 분석 (Hosseini et al. 2018)



Hosseini, M. R., Martek, I., Zavadskas, E. K., Albinu, A. A., Arashpour, M., & Chileshe, N. (2018). Critical evaluation of off-site construction research: A Scientometric analysis. *Automation in Construction*, 87, 235-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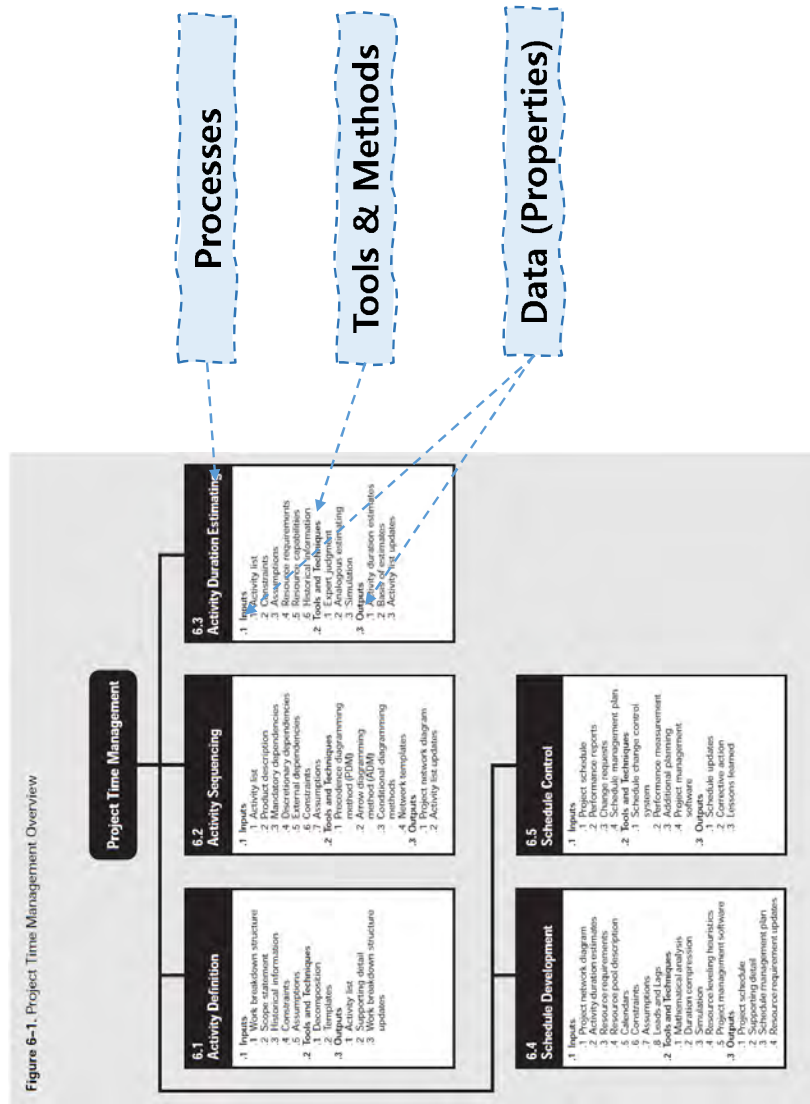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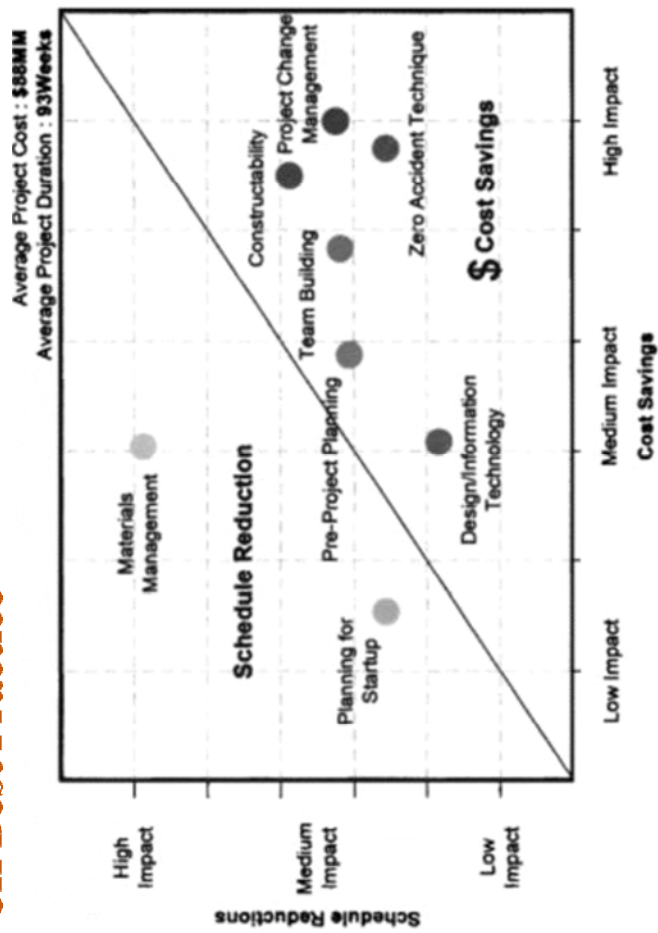


Figure 6-1. Project Time Management Overview

<https://www.construction-institute.org/>



CII Best Practice 활용에 따른 효과 비교 (Lee et al. 2005)

(출처: Lee, S. H., Thomas, S. R., & Tucker, R. L. (2005). Web-based benchmarking system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1(7), 790-798.)

발주자/CM자 노력 (Jung 외 2018)

Combining Facilities (PBS) with Functions (FBS)

- Standard LOD defined
- Flexibility enabled (Jung & Woo 2004)
- Managerial requirements optimized
- Fitted to monitor contractors' progress in terms of cost & schedule (EVMS & AWP)
- Standard matrix defined (Jin et a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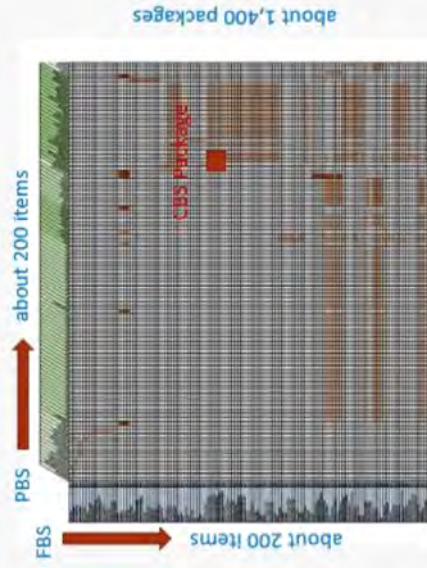


Figure 1 Matrix combining PBS and FBS

2018 TECHNOLOGY SHOWCASE

Uniting the Future: People, Process, and Technology

Jung, Y., Kang, S., Jin, Z., Choi, S.-H., Koo, C.-G., (2018). "Smart Factory Life-Cycle Management", CII Technology Showcase 2018, San Antonio, Texas, USA.

발주자/CM자 노력 (Jung 외 2018)

Scanning for 3D As-Built Dwgs



2018 TECHNOLOGY SHOWCASE

Uniting the Future: People, Process, and Technology

Jung, Y., Kang, S., Jin, Z., Choi, S.-H., Koo, C.-G., (2018). "Smart Factory Life-Cycle Management", CII Technology Showcase 2018, San Antonio, Texas,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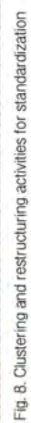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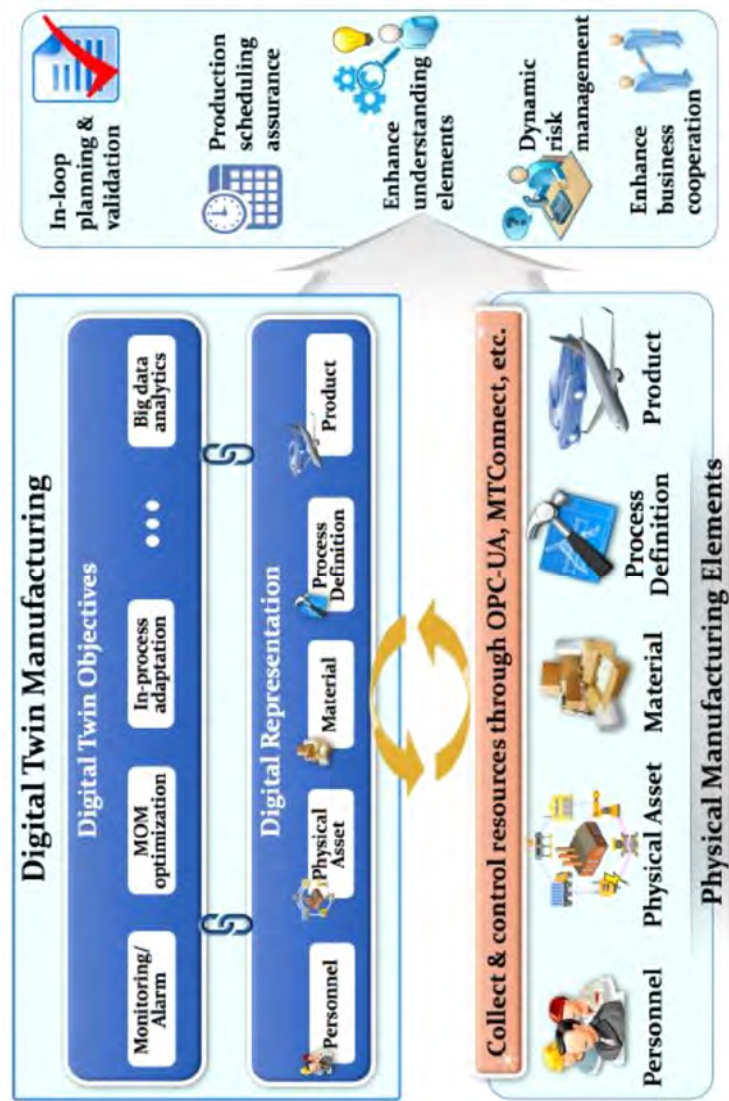


Fig. 11. CPM schedule for Case Project

강승희, 정영수, 김성래, 이익행, 이창원, 정진학. (2017). "초기 기획단계의 실적 및 경험자로 기반 공향사업 기 준공기 선정체계",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8(6), 2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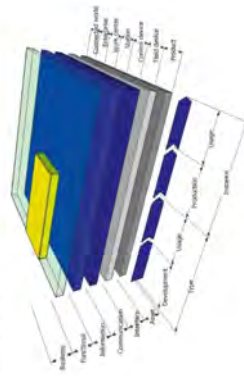
Kang, S., Jung, Y., Lee, I., Kim, S., Lee, C.-W., Jung, J.-H., Cho, N.-H. (2017). "Framework for Preliminary Scheduling Based on Historical Data: Focused on Airport Projects",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Chengdu, China, Paper #45.

4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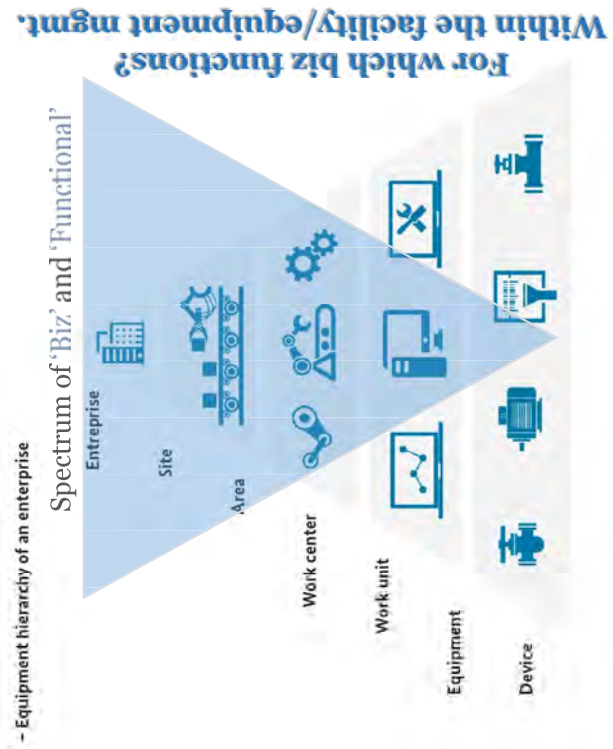
Source: ISO (2018), Call for Input: Digital Twin Manufacturing, ISO TC184/SC4/WG15

Figure G.3 - 3D RAMI representation



F.2.6 Asset and Integration layer

The Asset Layer represents the lowest level of RAMI 4.0. It reflects the physical world which has to be reflected in the information world by the upper 4 layers. The Integration Layer is a kind of adaption or transition layer. For example, it converts physical values into electrical one and in consequence into computer numbers according to a certain format. It also can have subroutines in order to send and receive information of a drive (i.e. to control the speed of a drive (sub function)).



BMW (2018). The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on Shell. TRILATERAL PERSPECTIVES from France, Italy and German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i).

중 간 과

✓ 공유

- 시설 사용 공유: 플랫폼 기업의 건설 진출
- 발주 성과 공유: 발주 방식의 다양화, 책임과 권한의 공유 (대안 발주방식 확산)
- 생산 과정 공유: Off-site constr. (OSC), 현장 장비, 현장 관리 기능
- 시설사용 - 발주방식 - 생산방식

✓ 표준

- 사회/경제/관리/기술의 조직내, 조직간, 국가간 표준 활용
- 생태계 내의 관리기법, 업무방법, 자료공유 표준의 활용 증대
- 발주자 주도의 표준 활용 증가 (증가의 사례)

✓ 4차 산업

-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
-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치인터넷, 로봇, 드론, 인공지능
- 건설산업 참여의 확장 필요 (확장의 의미)

✓ CM의 변화: 생애주기/참여자 관점 확대 - 시설관리 개념 확대 - 기술융합 참여 확대

시공사가 본 건설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주)대우건설

정명호 프리콘팀장

PF Profile



정명호
팀장/건축사/기술사

Tel: +82-2-2288-3205
C.P: +82-10-2766-6343
E-mail: myungho.jung@daewooenc.com

Professional Experience

2021~현재 ㈜대우건설 스마트혁신팀 팀장
2019~2020 ㈜대우건설 프리콘팀 팀장
2018~2019 과천주공1단지주택재건축현장
2017~2018 화성동탄2지구A5,A6BL현장
2013~2017 싱가포르파시르콘도현장
2009~2013 청라푸르지오현장
2004~2009 주택CM기술팀 / (주)KT인력교류
2001~2004 오류동푸르지오현장
1999~2001 금호제8구역재개발현장
1997~1999 부평대우아파트현장
1997~ (주)대우건설 입사

Business performance (Preconstruction service)

2020.09 성남시아탑동403번지 물류센트 신축공사 프리콘 용역 계약 체결
2020.06 부산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3단계 프리콘용역 협약 체결
2020.04 베트남하노이스타레이크시티B3CC1 프리콘 용역 계약 체결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현장(프리콘용역수행) 준공 지원
2019.08 오시리아테마파크상업시설 신축공사 프리콘 용역 계약 체결

시공사 관점의 건설사업관리

프리콘서비스를 중심으로

2021.04



[프리콘 서비스 수행사례 소개]

1. 프리콘 도입과 기대효과('5)
2. 대우건설의 다양한 시도('5)
3. 대표사례 소개('10)
4. 한계와 대응('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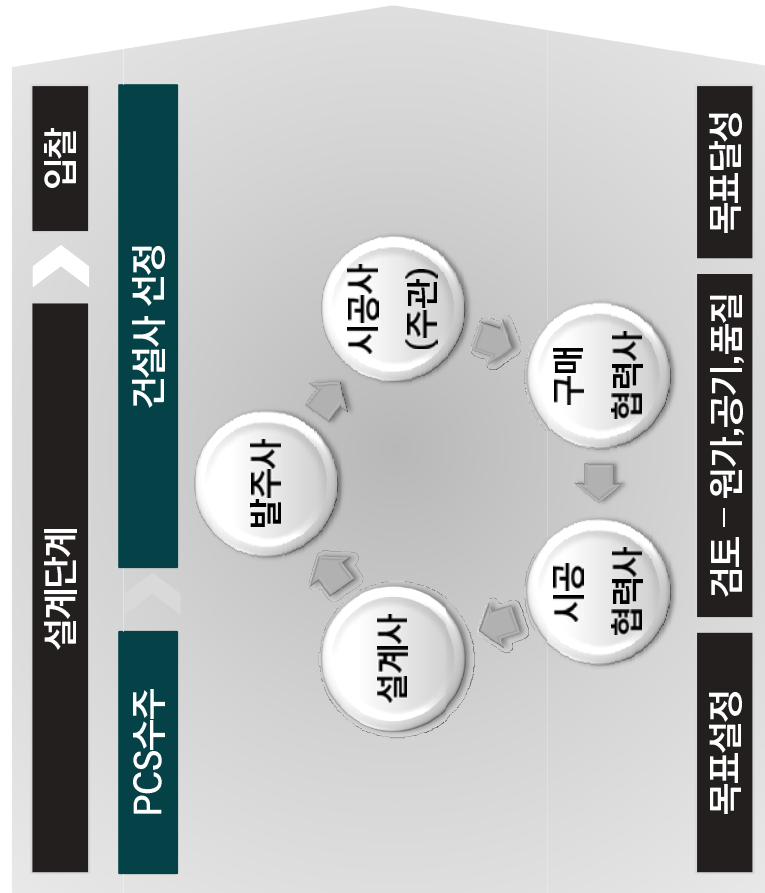
[건설사업관리 발전을 위한 제언]

5. 스마트건설 도입을 통한 건설사업 관리 효율화('5)
6. 질의응답

Chapter 1.

프로젝트 혁신 방안 “포리콘 도입과 기대효과”

프리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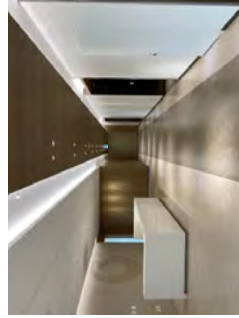
시공단계

시공 / 사업 RISK 최소화



프리콘수행

CM at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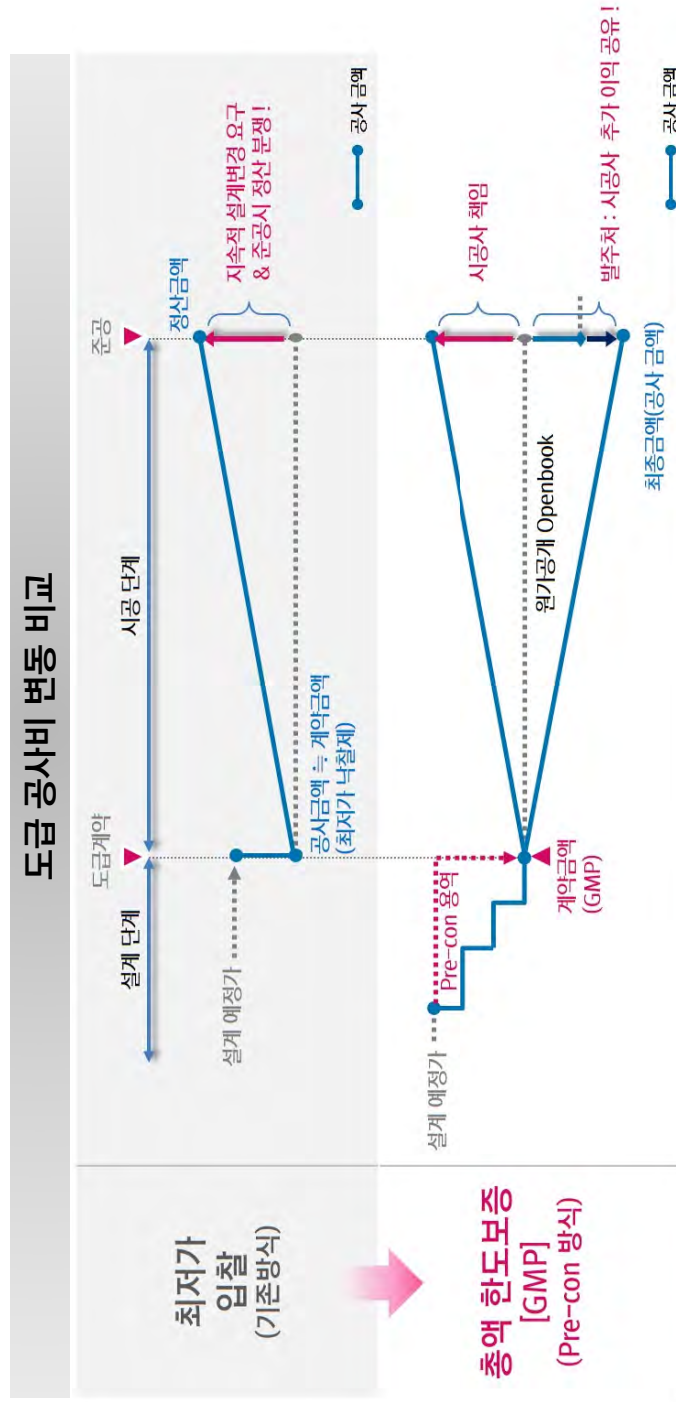
실제시공

가상시공 = 실시공 "목표실현"

공사 수행 전 발주자의 목표(예산, 공기, 디자인)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검토를 수행

프리온을 통한 기대효과 - 1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발주처:공사비 보증으로 위험부담감소 / 시공사:이윤보장및 추가이익의 기대

프리콘을 통한 기대효과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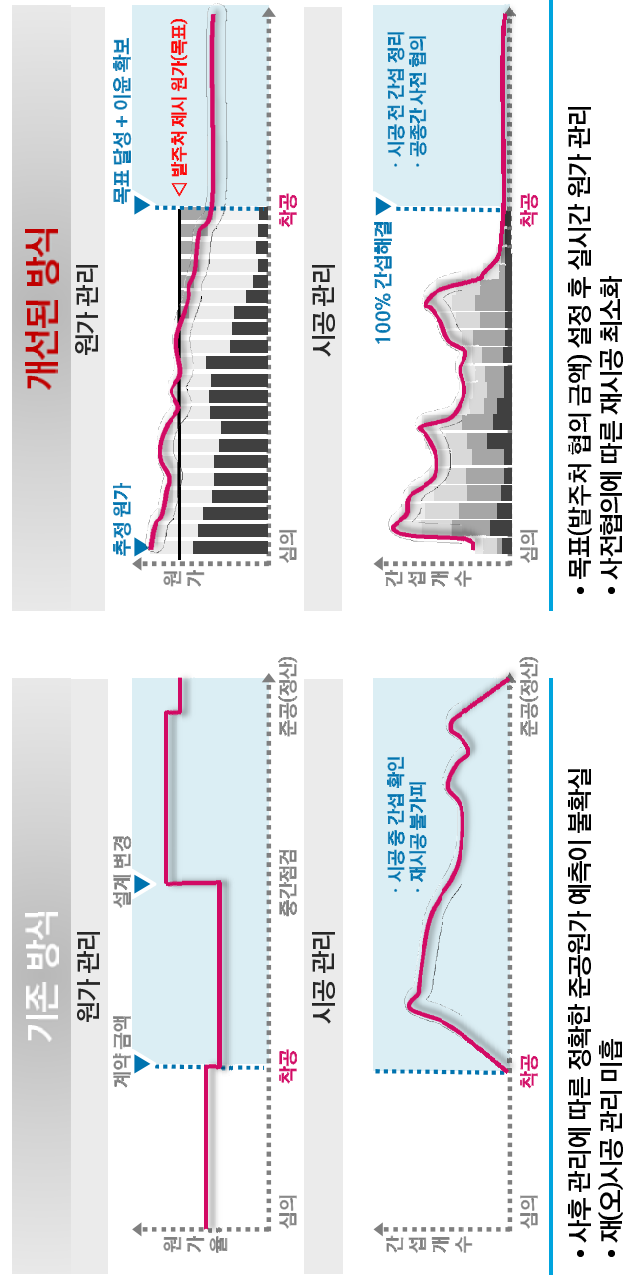
사전 확정된 공기 준수



시공사 및 전문업체의 조기 참여로 사업기간 단축도 가능

프리온을 통한 기대효과 - 3

시공성 리스크 최소화



- 목표(발주처 협의 금액) 설정 후 실시간 원가 관리
- 사전협의를 따른 재시공 최소화

- 사후 관리에 따른 정확한 준공원가 예측이 불확실
- 재(오)시공 관리 미흡

시전에 모든 리스크를 도출하여 재시공과 시공실패를 최소화

프리콘을 통한 기대효과 (소결)



Chapter 2.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한 "기술과 절차의 완성"

■ 대우건설의 다양한 시도 “프리콘 조직 변화 실험”

1.0 요소기술의 검증과 과감한 투자

2013~2017. 자체교육과 내부역량강화로 프리콘의 인프라를 확대

1.5 Pre-con TFT 을 통한 인원확충과 직무순환 계획

2018. 프리콘을 통한 현장개설과 인원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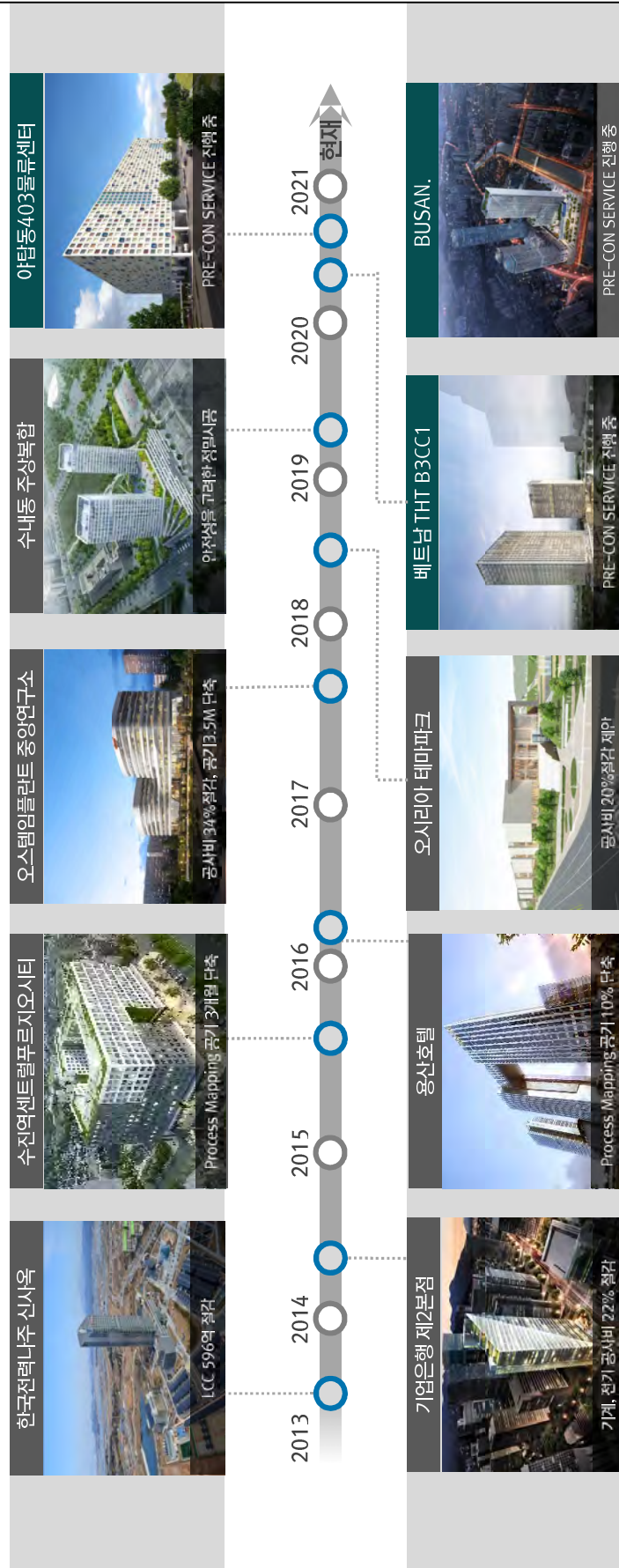
2.0 민간영입파트와 시너지

2019~2020. 프리콘TFT/프리콘팀으로 시너지 창출

3.0 건축분야 인력 추가 확충 및 교육 강화

2021.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여 기술인력을 확대

대우건설의 다양한 시도 “프로젝트별 요소기술 검증/발전”



[1단계] 자체수행 / 검증

[2단계] 용역수주 진행

프리콘 기술의 완성 “초기단계~준공까지 실제 사례를 통한 프리콘서비스 수행 효과 검증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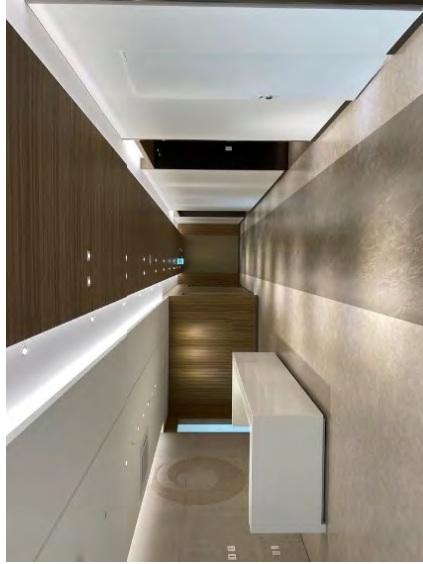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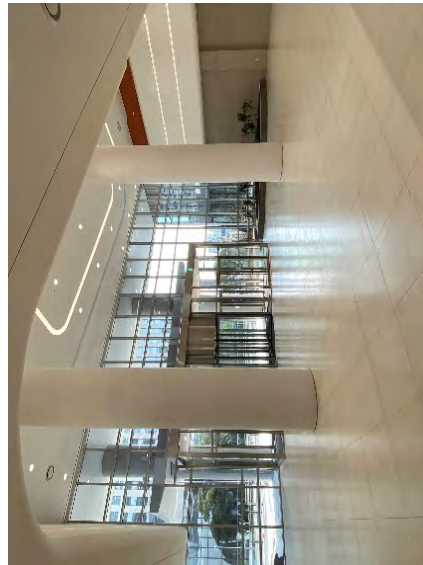
***** 중앙연구소

용도명	교육연구시설
위치	서울 강서구
규모	B3F/5F
연면적	21,479평
설계사	희림건축
공사기간	'18.07~20.04

P.C.S 수행

수행기간	'17.08~18.04
수행업체	(주)대우건설

프리콘 기술의 완성 “초기단계~준공까지 실제 사례를 통한 프리콘서비스 수행 효과 검증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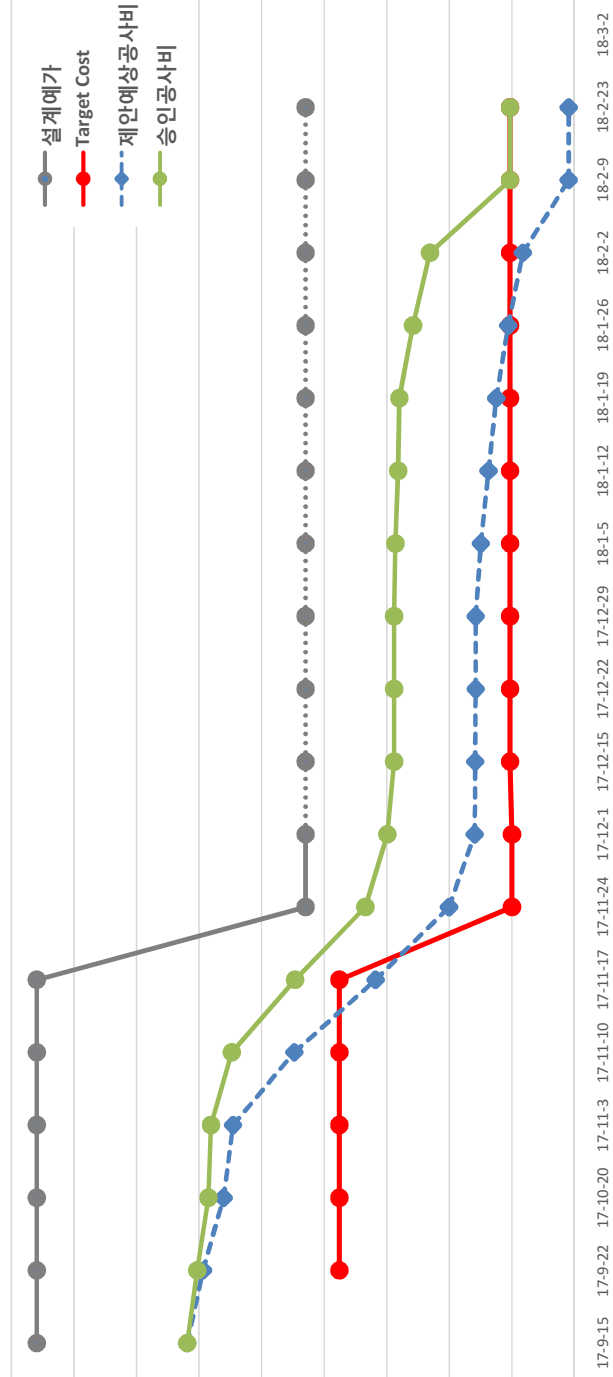


Chapter 3.

대표사례 소개 (사업관리 관련)

①서울 강서구00연구시설(201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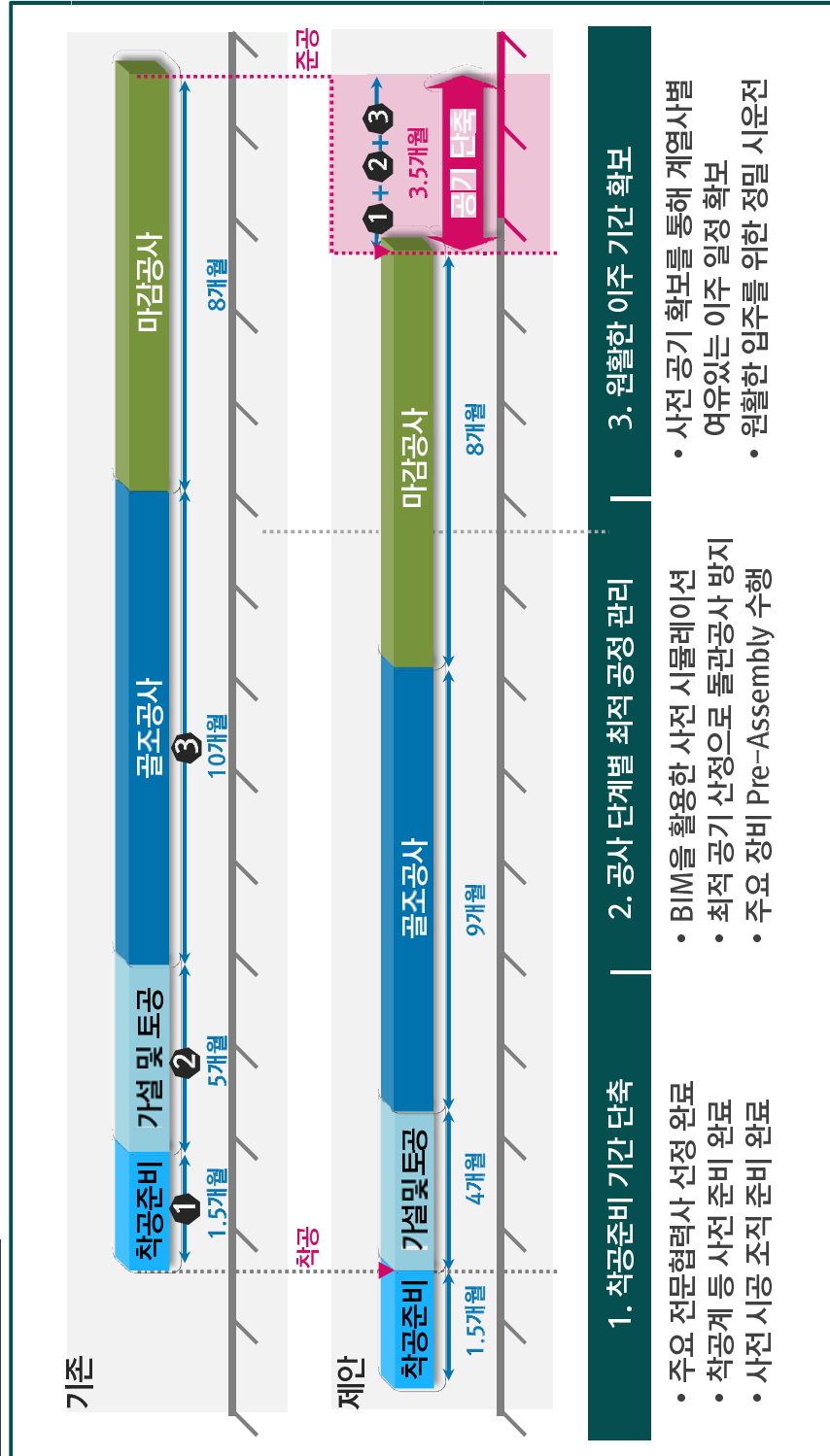
Cost trend



단계별 목표 공사비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 / 체계화된 회의방식과 효율적인 tool을 활용하여 발주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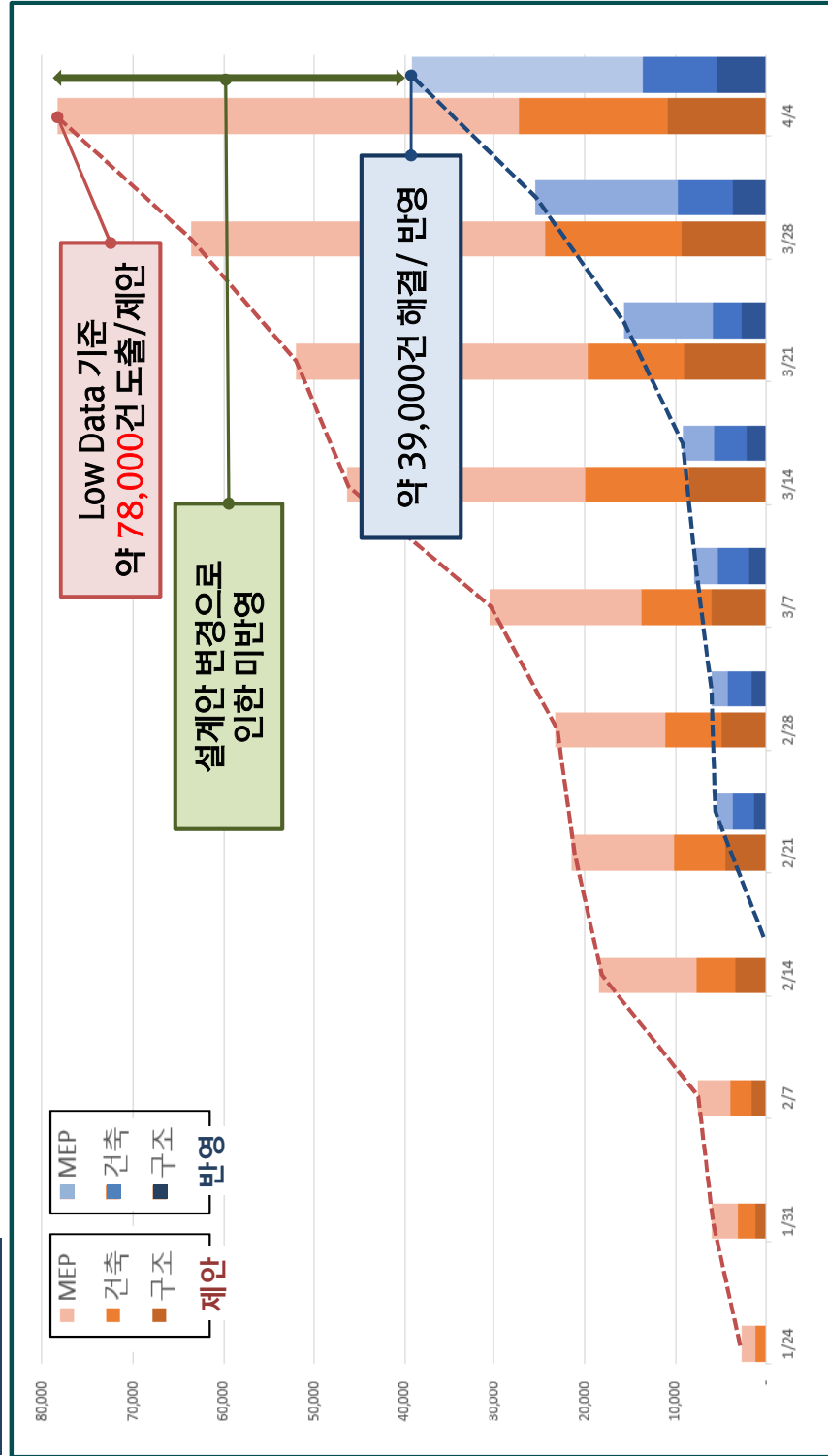
①서울 강서구00연구시설(2018~2020)

공사기간



①서울 강서구00연구시설(2018~2020)

Crash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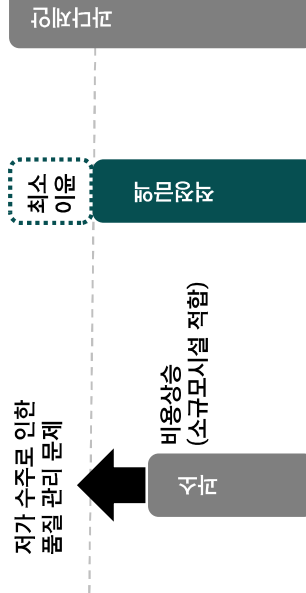


② 경기 분당구 00물류시설 (2020~진행중)

PI특성반영

- 1) TARGET을 프리퀀시에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2) 인허가 진행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일정관리를 수행
- 3) 시설에 최적화된 신기술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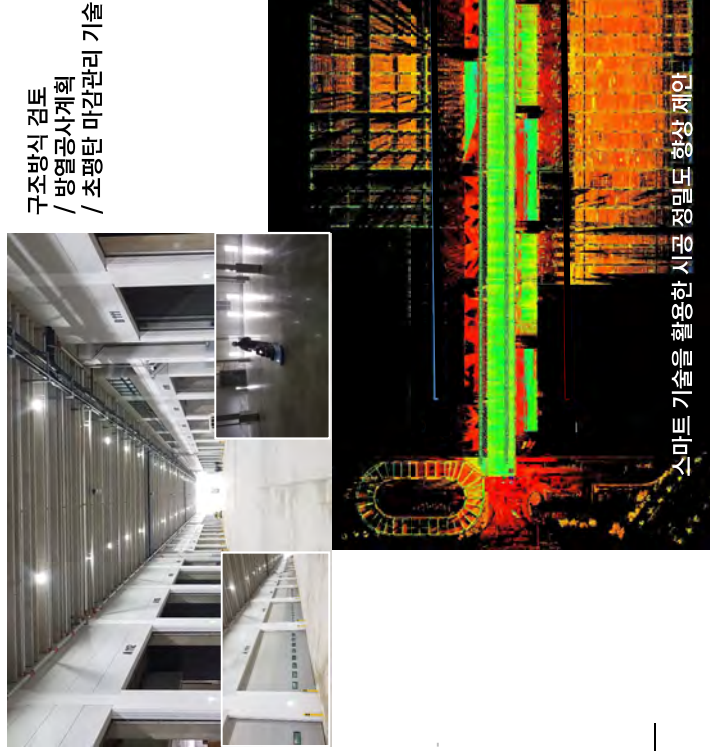
유지보수 성능 보장



소규모 업체

이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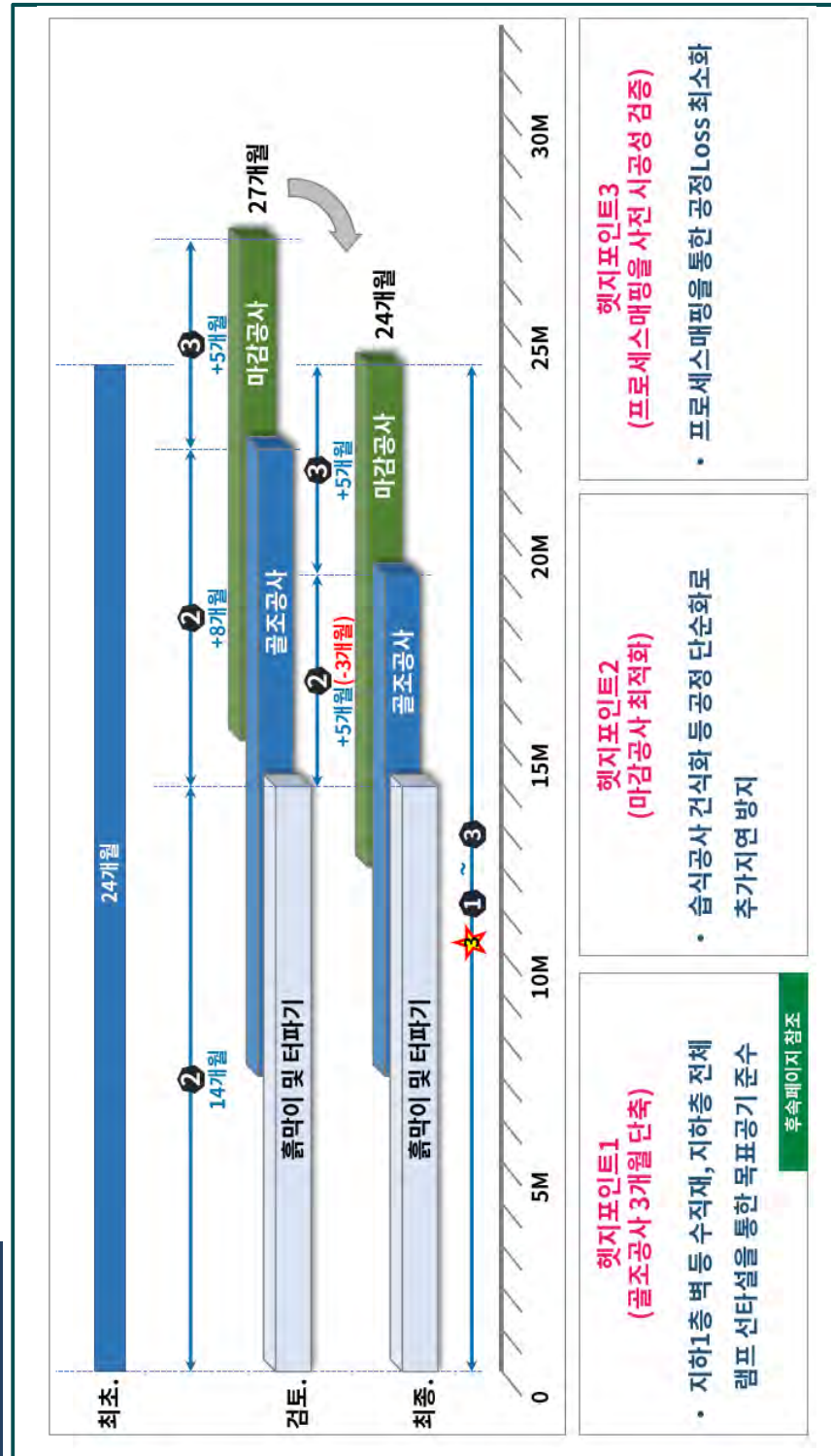
상위사 평균



구조방식 검토
/ 방열공사계획
/ 초평탄 마감관리 기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공 정밀도 향상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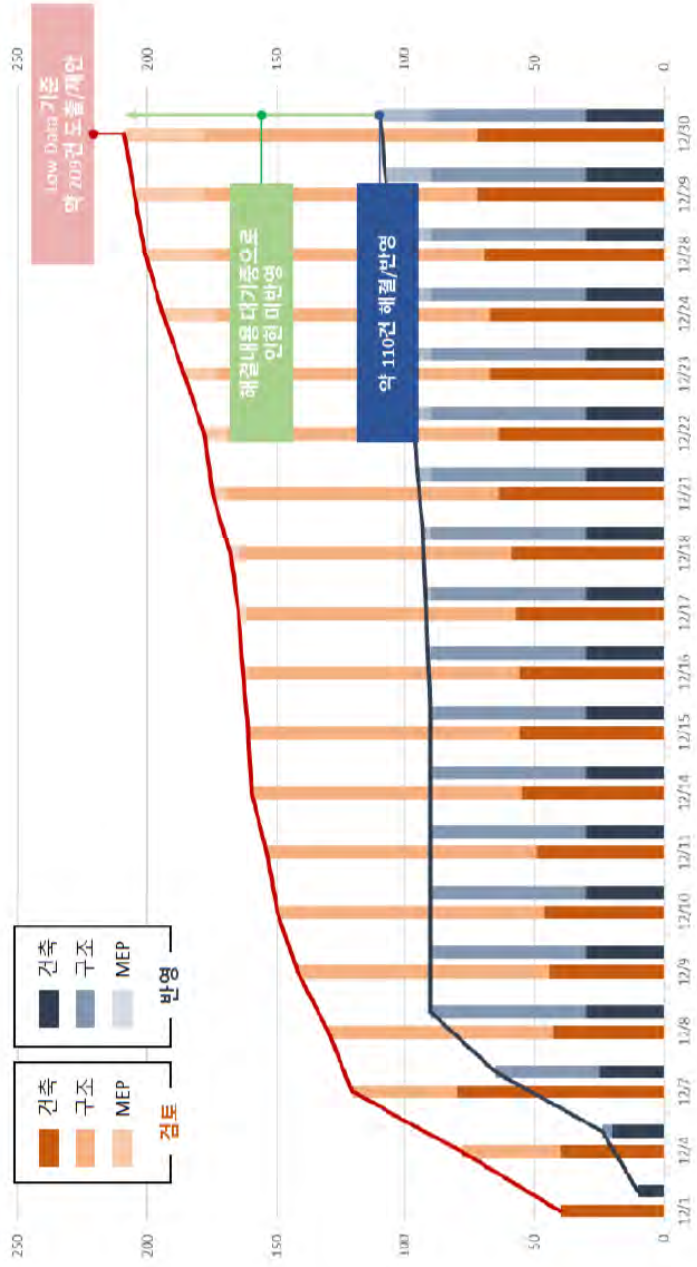
공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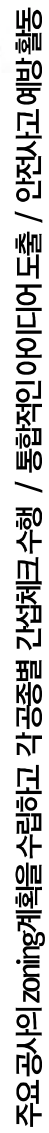
② 경기 분당구 OO물류시설 (2020~진행중)

Crash check

간섭사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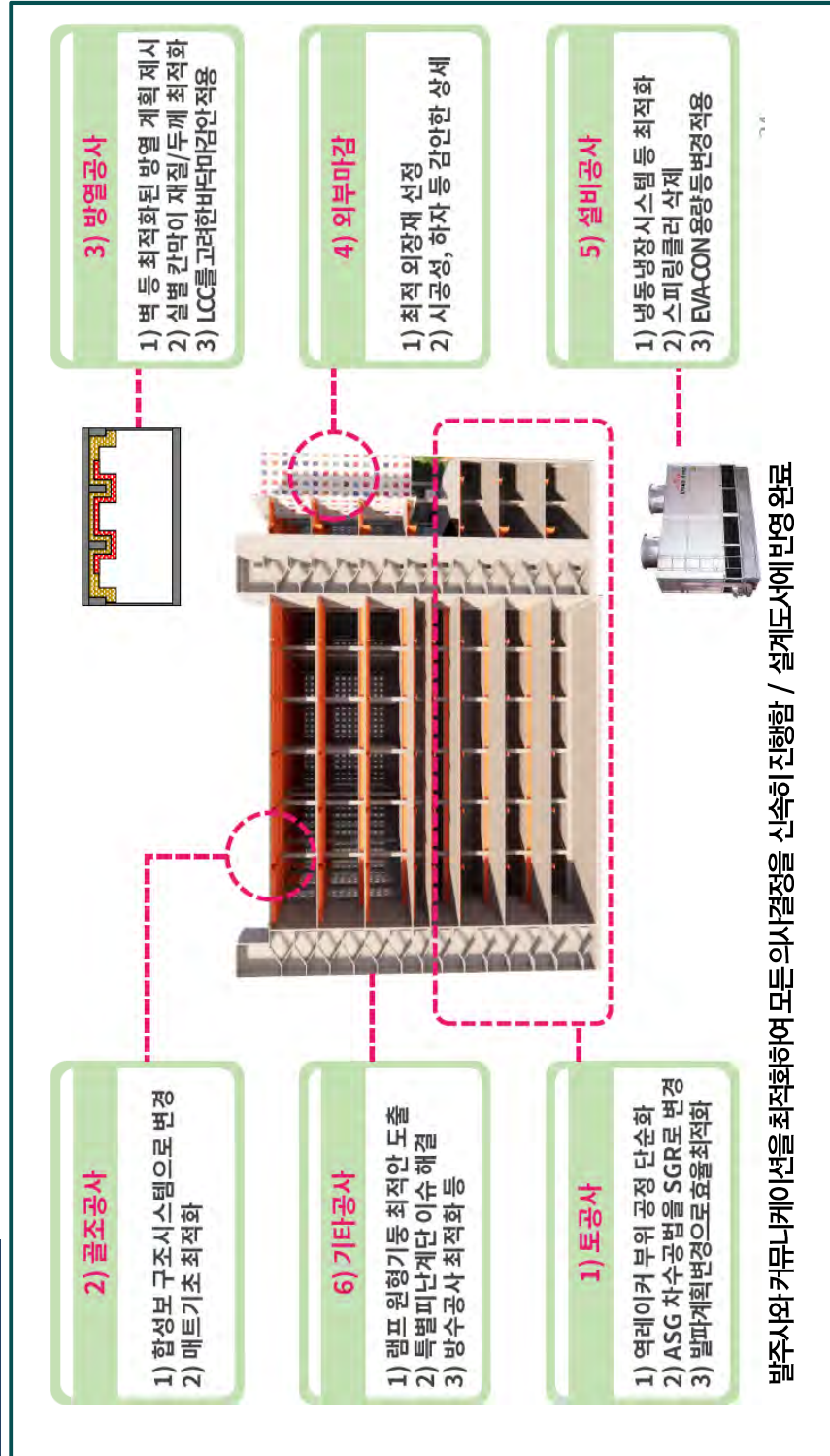


공사계획검토



② 경기 분당구 OO물류시설 (2020~진행중)

설계안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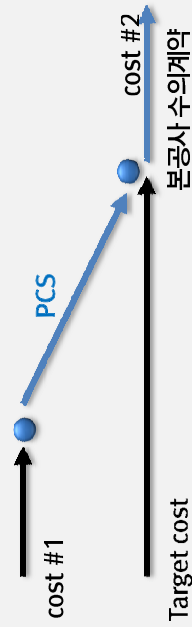
Chapter 4.

현실적인 한계와 대응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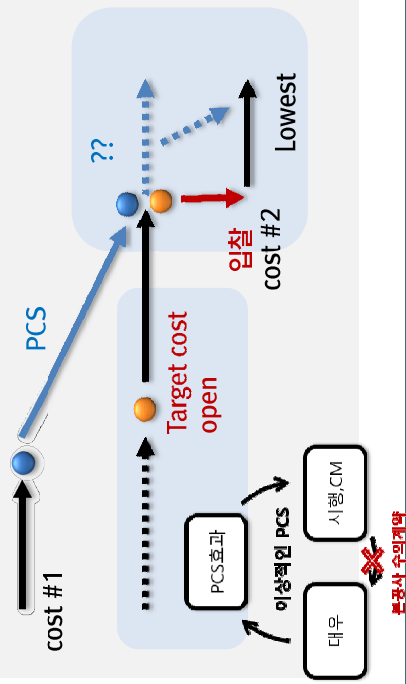
문제점

국내 시장의 특성 이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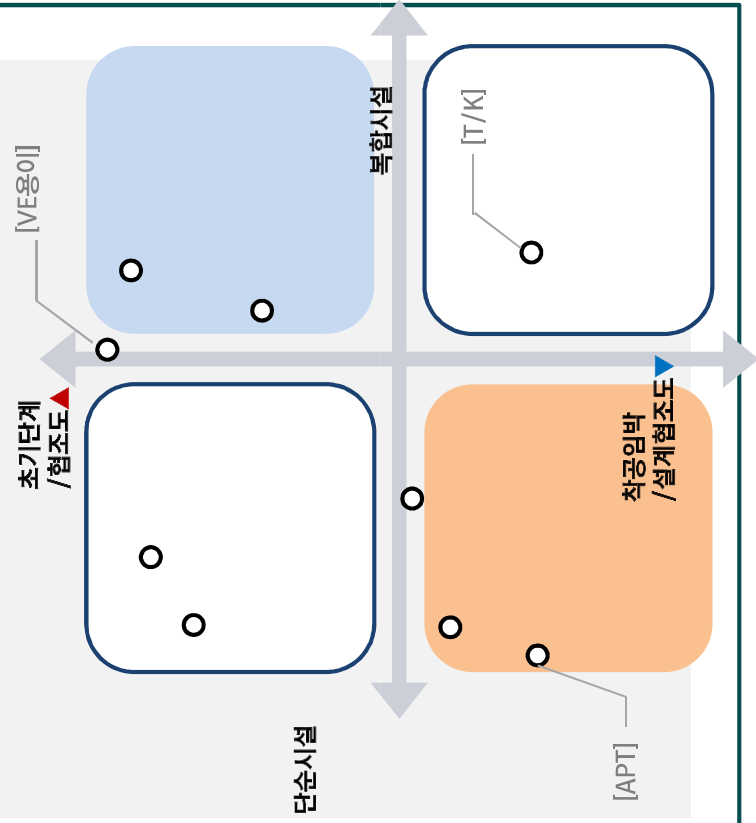
미국식 프리콘



국내 수행 사례



프로젝트 특성별 효과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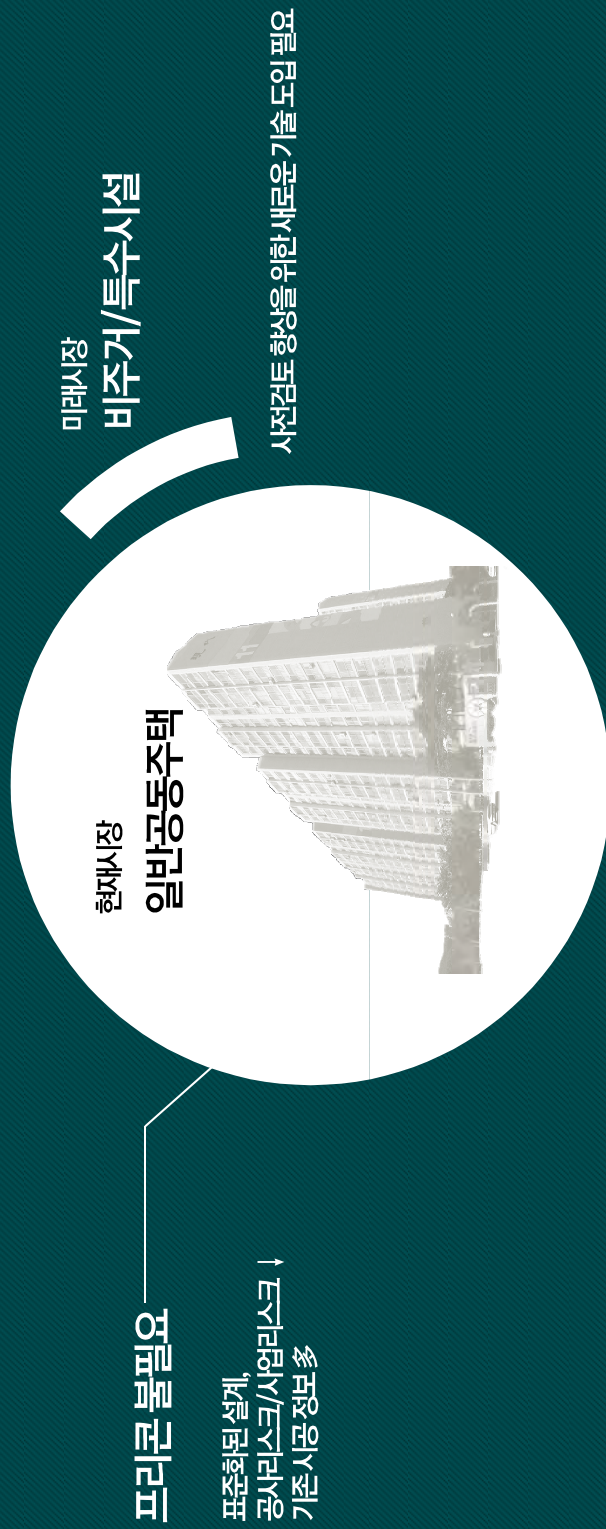
■ 문제점 / 대응방안

프리콘 현장 운영시 문제점 발생 요인

대응방안 모색

- | | |
|------------------------------|----------------------------|
| 1. Target cost 설정 기피 / 일정 지연 | 1. 신뢰 기반한 공사비 예산 공유 |
| 2. 무리한 목표(금액/공기) 제시 | 2. 종합적인 사업이윤 시너지 추구 |
| 3. 의사결정의 유예 | 3.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의 간결화 / 문서화 |
| 4. 결정사항에 대한 도서반영 미흡 | 4. 철저한 인허가 일정관리 & 설계사 인센티브 |

주거시설 위주의 건설시장,
프리쿤은 미래 건설시장을 준비하는 일에 더 적합합니다.



Chapter 5.

스마트건설 도입을 통한 건설사업 관리 효율화

자체제작 S/W-SMILE (1분 0초)



BIM 관련 영상(1분14초)



스마트공사관리시스템 (2분45초)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법무법인(유)울촌

정유철 변호사

이동현 선임노무사

Profile

Education

2009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2007 경희대학교 정부계약제도 전문과정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거래법연구과정
199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Professional Experience

2010~현재 법무법인(유) 올촌
2020~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기 공공개발 계약심의위원
2020~현재 서울을림픽기독교민체육진흥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CM협회 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2019~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률자문
2018~현재 건설산업비전포럼 법제위원회 위원
2016~현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5~2020 대한건설협회 법률자문위원
2015~2016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 법률자문위원
2014~현재 건설기술교육원 강사
2012~2017 한국CM협회 계약·클레임·리스크 관리위원회 위원장
2010~현재 대한상사중재인
2010~현재 대한상사중재인, 한국 CM협회 강사
2009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 해군중앙경리단 법률자문
2007~2009 국방시설본부 법무실장
2006~2007 국방부검찰단 검찰과장
2005~2006 해군본부 법제과장, 조함단 법률자문
2003~2005 국방부조달본부(현방위사업청) 법무실 계약·송무 책임법무관
2001~2003 군판사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유) 올촌

Tel: 02-528-5212

E-mail: ycjung@yulchon.com

Representative Matters

- G사, S사 등 주요 토목, 건축 및 플랜트 현장자문을 제공해 건설계약리스크 방지 및 성공적인 결과도출
- G사, H사, S사 등 다수 업체를 대리해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등 관련 소송 및 중재에서 성공적인 결과도출
- 다수의 부정당제청문 및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도출
- 다수의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대리해 추가비용, 발점 등 자문 및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도출
- K사를 대리해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지정처분 행정소송에서 성공적인 판결도출
- D사, H사를 대리해 기술형 임차공사의 설계상의 감점부과 방지 관련 자문에서 성공적인 결과도출
- D사를 대리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도출
- D사, S사 등을 대리해 공공발주 대형공사에서 간접비 등 추가공사대금 소송 및 중재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도출
- D사 등을 대리해 물가변동관련 소송 및 중재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결과도출
- H사를 대리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성공적인 결과도출
- D사를 대리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도출
- A사 및 H사를 대리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의 성공적인 결과도출
- G사 외 8개사를 대리하여 ○○모금자리 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증액청구 중재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도출

Publications

2019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건설경제신문
2017 공공계약 판례여행, 건설경제신문

Profile



이동현
 노무사
 법무법인(유) 올촌

Tel: 02-528-5827
 E-mail: dhlee@yulchon.com

Education

- 2009 제18기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 2009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Professional Experience

- 2017~현재 법무법인(유) 올촌
- 2012~2017 BR KOREA(주) (SPC 그룹)
- 2010~2012 노무법인 대명
- 2010 노무법인 세영
- 2009 한국인사노무법인

Representative Deals

2021	다수 기업 종대재해처벌법 대비 컴플라이언스 수행 중
2020	다수 기업에 대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쟁점 자문
2020	다수 건설사 종대재해 관련 노동청/경찰 수사 대응 및 법적 쟁점 자문
2019	D사, S사, N사 등 다수의 M&A 관련 인사노무 실사
2019	L 그룹사 인사노무/산업안전 점검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2019	S사 도급 계약 관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쟁점 자문
2019	H사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개정 프로젝트
2018~2019	I사, B사 등 다수의 M&A 관련 인사노무 실사
2018~2019	H사/I사 등 다수 불법파견 프로젝트/컴플라이언스 수행
2018	외국계 K사 산업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조사
2018	A사, S사 등 근로시간제 개선 및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프로젝트
2018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내 비위행위 내부조사
2018	다수 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강의
2018	I사 내부조사 자문
2018	I사 및 V사 종대재해 관련 노동청/경찰 수사 대응 및 법적 쟁점 자문
2017	외국계 V사 종대재해 관련 종합적인 법률 자문 제공
2017	H사 인사노무 점검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2021. 4. 8.

법무법인(유) 을원
변호사 정유철

Copyright 2021 Yulchon LLC.

1. 증가하는 법률 RISK

1. 증가하는 법률 Risk



1. 증가하는 법률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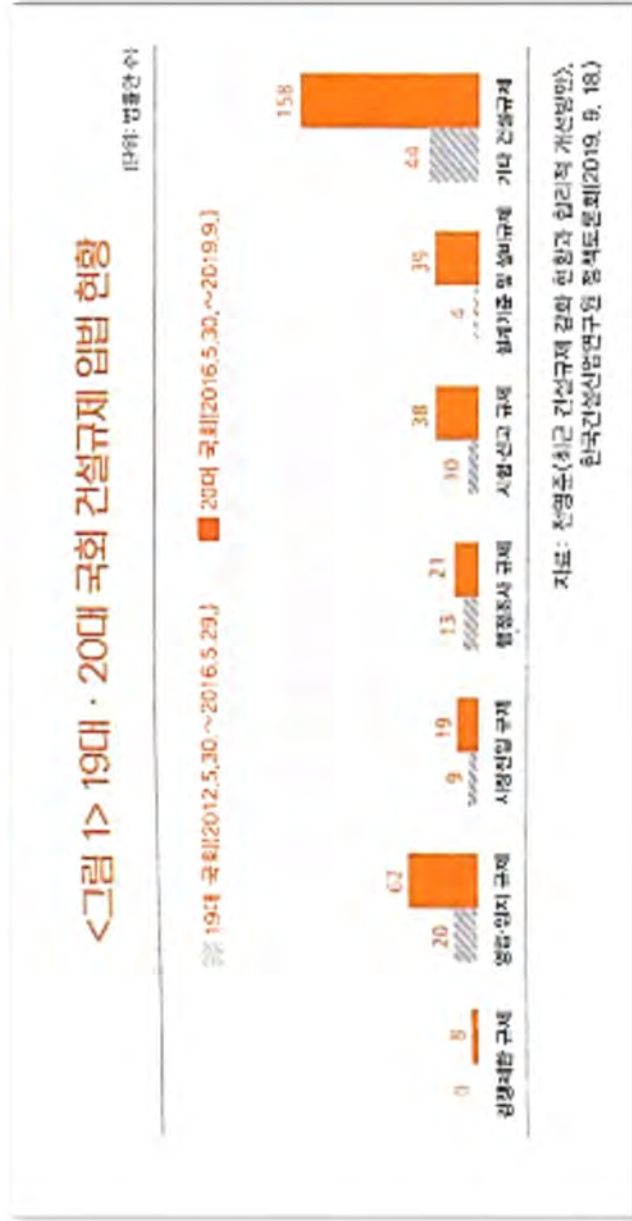
RISK TAKING

클레임 정답이 있는가?

주요 클레임 분쟁 구조

클레임 디자인

1. 증가하는 법률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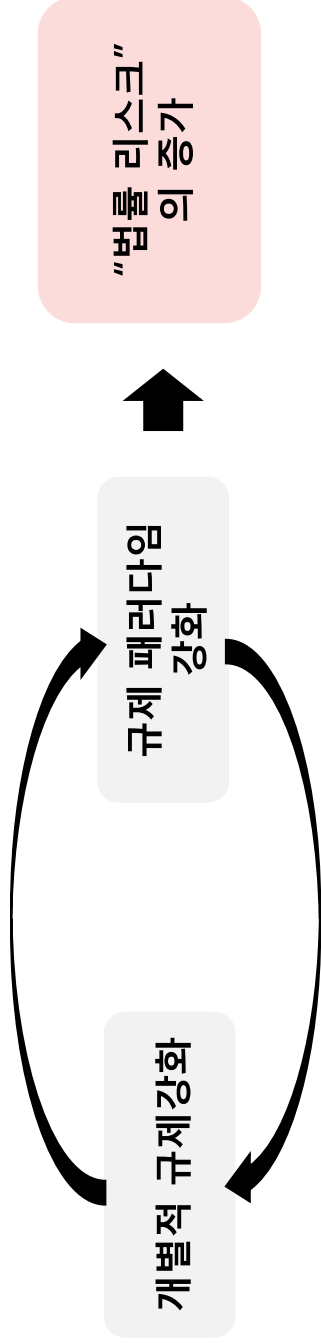


- 20대 국회 들어 건설규제 신설, 강화 내용을 담은 입법 발의 19대 국회 대비 3.45배 증가 (e대한경제, 2021 메가트렌드 76p)

1. 증가하는 법률 Risk

법률 Risk 패러다임의 변화

- 과거의 “법률 분쟁”은 각종 사건 및 사고의 사후조치를 위한 것이었음
- 현재 그리고 미래의 “법률분쟁”은 그 자체가 중대한 리스크에 해당함



- (과거의 법률 리스크) 소송의 양 자체가 증가하거나 소송의 쟁점 또는 난이도가 상승하는 형태로, 법률 분쟁의 승패 내지 결과가 리스크의 주된 내용
- (미래의 법률 리스크)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승패와 무관)로, 법률 분쟁 자체가 리스크임
- 국내외 주요 대기업들의 법무 업무 형태? “컴플라이언스”

CM사 주요 이슈

Q

건설사업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Q

기술지원기술인(비상주)의 현장점검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Q

무리한 예산배정으로 인한 야간작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Q

발주청 등 점검기관에서 안전점검시 적정 판정 받은 부분까지 책임?

Q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

Q

건설사업관리자 및 설계사의 안전관리 비용 보전방안

Q 해외 건설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Q 계절변화에 따른 질병 발생시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

Q 공동이행방식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시 책임 주체?

Q 외부인의 현장 방문시 외부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

Q (용역기간 연장 없이) 지연된 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Q 사고발생시 대응 매뉴얼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작업(공사)현장 재해사고 발생시 법률 관계

사고조사	수사기관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민사책임	손해배상,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합의대상	형사합의금 및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
행정제재	1. 산업안전보건상 작업중지 2. 시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하도급 참여제한 3. 감리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영업정지 4. 공공계약의 경우 국가(지방)계약법상 부정당당제: 특정 입찰 및 계약과의 관련성

참고사항: 산안법 개정으로 책임 & 처벌 대폭 강화 공동수급체 책임관계 / 불법하도급 문제 / 근로기준법 위반 등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1 정식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4장(총칙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보칙) 16조로 구성

3 종래 재해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기업살인법’ 제정 필요성 논란

4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 등을 계기로 입법 추진 급가속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중대재해처벌법 구조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관련 핵심은?

1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가?

- 조직/권한 명확화를 통한 합리적 리스크 분배
- 보고 및 의사결정 관여 범위 검토

2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는가?

- 종사자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수립
- 원료, 제조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수립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업무 또는 업무 관련 물적 요소에 의하여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
- 사망 1명 이상
요치 6월 이상 부상 2명, 직업성 질병 1년내 3명 이상

※ 산안법 상 중대재해 개념과 상이

- 사망 1명 이상, 요치 3월 이상 부상 2명, 직업성 질병 동시에 10명

중대시민재해

- 원료, 제조물 / 공중이용시설,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
- 사망 1명 이상
요치 2월 이상 부상 10명 이상
요치 3월 이상 질병 10명 이상

※ 제조물책임법 상 형벌등 상이

- 형사처벌규정이 없음
3배 이하 배상책임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책임 주체

규 정	사업주	자신의 사업 영위,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해 석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 책임이있는 자 ➤ 대표이사 여부!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 대표·총괄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준하여야 하므로,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필요 • ‘또는’의 문제: 책임주체가 선택적인지 병존적인지 여부 ※ 산안법 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의무와의 조화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구체적인 안전보건확보 의무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 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 1, 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호 『재해예방 필요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인적·물적 기반과 시스템 구축 의무

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운영 환경 조성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1호 『재해예방 필요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인적·물적 기반과 시스템 구축 의무

- 조직 설치, 인력 충원, 예산 지원, 운영 체계 확립
- 시민재해의 경우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필요
- ※ 제조 시 원료의 인체무해성, 설계 시 형상의 인체무해성 등 점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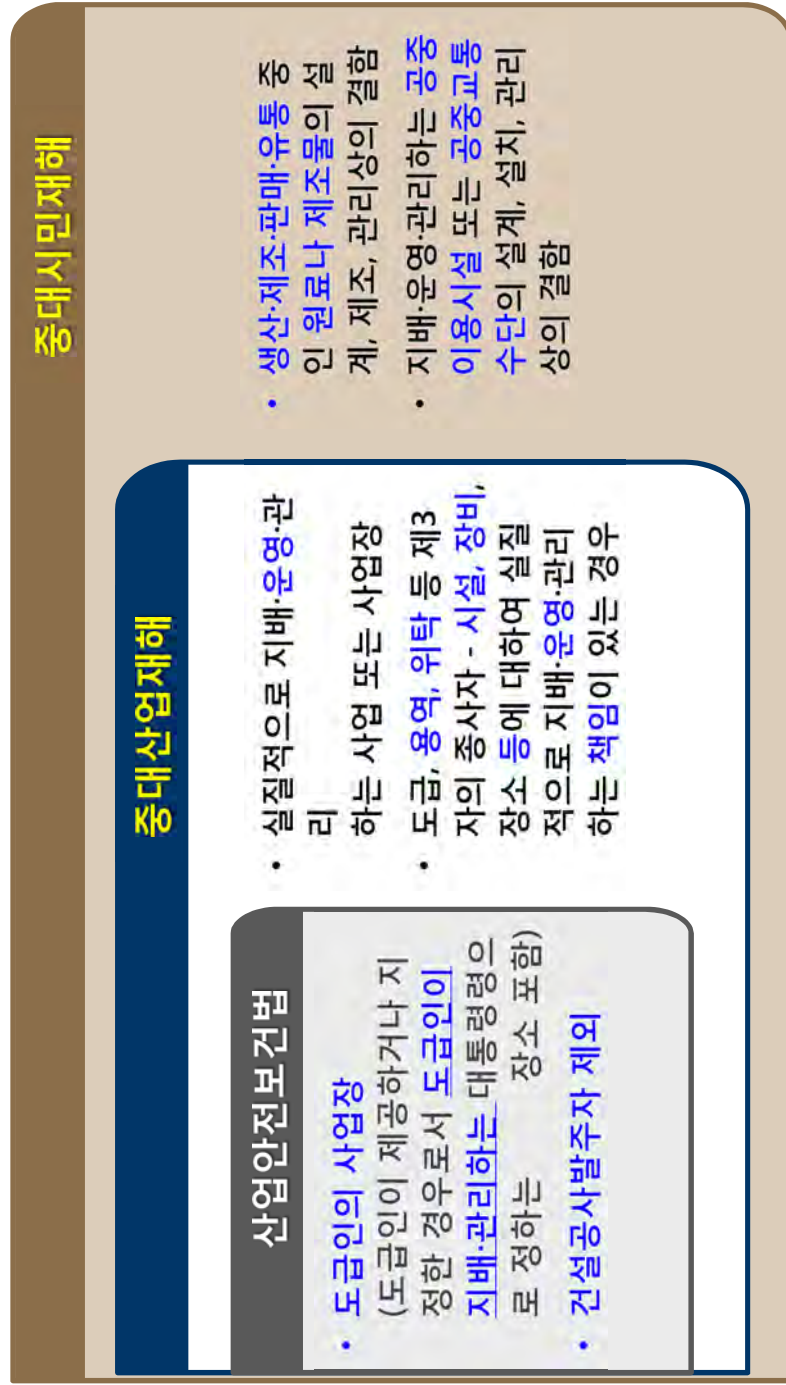
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운영 환경 조성 의무

- 다른 각호 의무가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표현하는 반면 ‘**관리 상의 조치**’라고 규정
- 대통령령이 문언 그대로 ‘**관리 상 조치**’에 한하는 의무만 열거할 경우 의무의 특성과 대비가 비교적 용이 - **컴플라이언스 포인트!**
- 그러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 포괄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무제한 확장 우려 - **시행령 입법의 중요성 매우 큼!**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범위 확대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대상(중대산업재해)

종사자

- 근로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자 : 근로자 외 이른바 특수고용직 포함 (산안법과 달리 하위법령 위임 없음)
- 수급인의 종사자 포함

도급·용역·위탁받은 제3자의 종사자 포함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 : 해석의 문제!(개정 산안법 동일)
- 산안법 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과 차이
 - “용역, 위탁”받은 자 포함 명시
 - 지배·운영·관리 대상에 장소 외에 “시설, 장비” 추가
 - 지배·운영·관리 “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처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망자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사망자 미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위 규정에 따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형의 1/2 가중(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사망자 발생 :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자 미발생 : 10억원 이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반 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 책임 ※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처벌

형벌

- 하한형 1년 이상의 높은 형량,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귀책사유로 명기
- 유해위험 발생 가능성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인식 필요
- 부작위에 대한 고의, 유해위험 발생 가능성 인식 인정되면 의무이행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인식은 인정될 것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고의와는 무관

다른 처벌법규와의 관계

- 중대산업재해 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 형태 적용 추정
- 중대시민재해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상황 감안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기타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 5배 이내의 배상은 경영책임자등이 아닌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책임
- 경영책임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법인 등의 구상권 행사 여부는 별론)
- 개인사업주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책임자인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

적용 제외와 유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적용 제외](#)
-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사업장은 [법률 적용 3년 유예](#)
- 법 시행 당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 3년 유예](#)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관련 핵심은?

1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가?

- 조직/권한 명확화를 통한 합리적 리스크 분배
- 보고 및 의사결정 관여 범위 검토

2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였는가?

- 종사자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수립
- 원료, 제조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수립

2.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전망

1 높은 법정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 → 재해 발생 시 조기 합의에 상당한 애로

2 시행령 제정 전, 해석&적용 여부 혼란 예상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산안법 양형 대폭 상승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법위반 양형기준

4 컴플라이언스 및 CM분야 건설사업관리 중요성 재조명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issue

Q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의 관계는?

[견해 대립 가능]

- (i) 산업법위반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므로 산업법위반 대신 중대재해처벌법만 적용
- (ii) 산업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와 내용이 다르므로 별도 성립

[산업법 위반]

- 산업법이 정하는 사업장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및 그와 관련된 범죄
- 의무 주체: 사업주
- 행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 양벌규정: 사업주 & 행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등
- 행위자: 경영책임자 등
-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 법인

1. 의무 주체 상이, 우선적용 규정 삭제 → **별도 성립**, 동일한 결론은 담보되지 않음
2. 동일인이 산업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실제적 경합(중한 법정형 1/2 가중) or 상상적 경합(형이 중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정형)

Q

(보론) 업무상과실치사상과의 관계, 수사주체는?



종래, 산안법상 중대재해사건은 산안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동일한 사실관계가 보호법익이 다른 두 가지 이상 범죄에 해당, 중한 형 처벌)으로 처벌
산안법위반은 근로감독관이, 업무상상은 경찰이 수사하여 검사가 병합 처분

[범죄 성립 구조]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동시 성립 예상(법정 의무인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의 과오)
-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업과사/산안법상 조치의무위반자는 산안법위반+업과사 처벌
-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안법상 조치의무자로 인정되는 경우 3종 범죄 모두 성립 가능

[참고 사항 : 수사 주체]

-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검사에게 배타적 전속관할 부여
- 근로감독관의 구체적 직무범위를 정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재 법률 상 경찰이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시행 전 법률 개정 가능성

Q

해외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 법위반 작업조건과 관련된 개별 안전조치 위주로 규정
- 실무상 재해조사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산안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16. 7. 19. 산재예방정책과-2380)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 산안법상 의무는 작업조건에 관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을 구체적 열거
- 중대재해처벌법상 추상적이고, 관리감독상 의무 형태로 규정되어 해외 수사가 산안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용이
-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형법 기본원칙과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고려

→ 언론등 외부적인 고소가 있는 경우 수사 및 처분 가능

Q 장소적 분리현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여부?

*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 경과규정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3년 유예

△ 노동관계법령상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관련제도 고유의 특수성 및 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2두5176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 입법 취지
- 하나의 법인 내 중대재해 발생 장소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성

▶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을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가능성 높음
단,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 현장 단위로 판단 가능성

Q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책임 범위 ?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의 주체	도급인(단, 건설공사 발주자 제외)	도급인 일체
책임의 대상인 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로서 산업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장소
지배·관리 여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야 함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거나, 그러할 책임이 있어야 함

Q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책임 범위 ?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장소를 지배·관리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예방 운영지침”]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작업 장소나 시설 등을 수급인에게 무상임대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이나,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수급인 소유 시설이라면 도급인의 지배·관리 밖에 있음.

[판단 시 고려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 지배·관리”와 유사하나, ‘운영’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도급인이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언상으로는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어 확대 해석될 여지 있음

중대산업재해 관련 컴플라이언스 방안

2021. 4. 8.

법무법인(유) 율촌
책임공인노무사 이동현

1. 컴플라이언스인식의 필요성

규제 현황

1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책임 범위 확대, 처벌 강화

2

형사처벌 대상/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처벌 강화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 1 사고 예방 -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 2 법적 의무 준수 주장의 근거 마련 - 처벌 리스크 최소화
- 3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 -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관리, 교육체계 확립, 규정/안전조직 재정비 등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컴플라이언스와 형사 책임]

- (i) 중대산업재해 발생
- (ii) 경영책임자 등 특정
- (iii) 재해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 특정
- (iv) 특정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및 인과관계 확인

[컴플라이언스와 형사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내용 = '컴플라이언스'
- 조직(인력/예산) 구축, 안전보건조치 이행 관리(운영상 지원)는 경영책임자의 컴플라이언스 내용
- 조직 구축과 이행 관리 시스템의 마련/실행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충분한 이행 주장 가능
- 책임 감경이 아닌 면책 여부의 중대 문제
-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자체의 억지 효과도 함께 기대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규제 동향]

- 2021. 1. 1.부로 시행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의무
- 2021. 1. 1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와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양형 기준 대폭 강화

[즉시 시행 필요성]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의무 준수 및 산업법 위반 범죄 등의 양형 기준 강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컴플라이언스 즉시 시행 필요
- 중대기업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대통령령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활동은 동시에 중대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1호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이사회 보고 · 승인
- 위 안전 및 보건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3. 안전 ·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2,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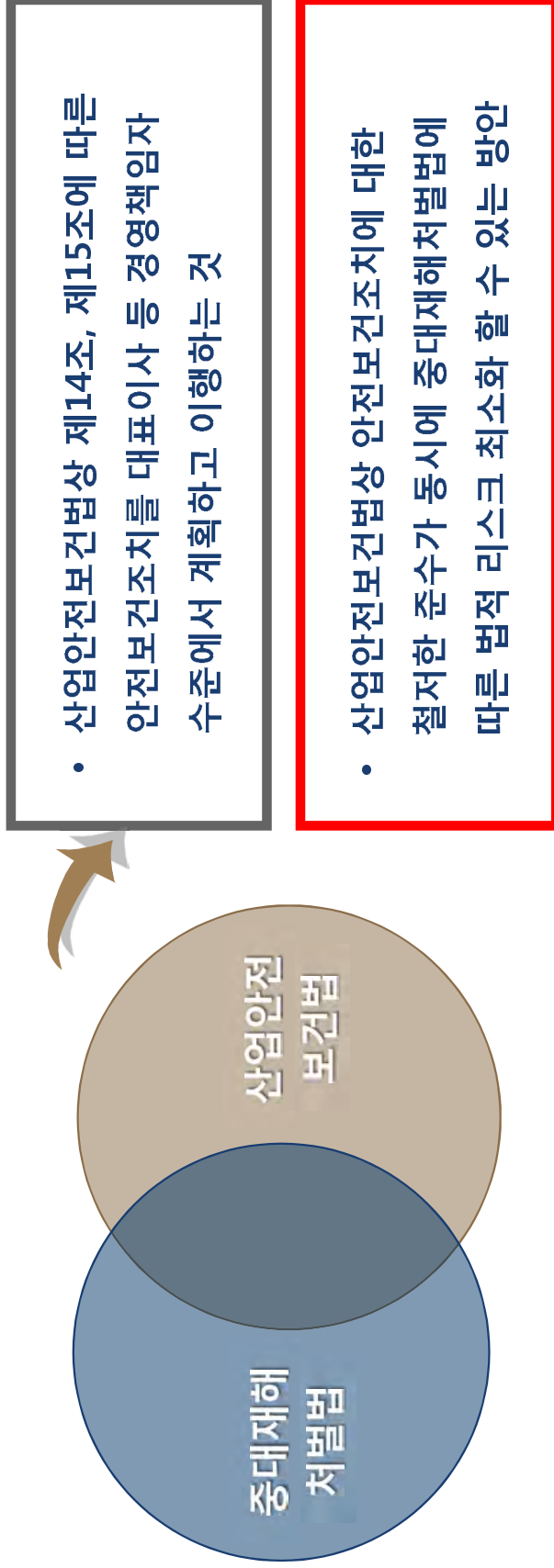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 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



3. 컴플라이언스 수행 방안

컴플라이언스상 주된 문제점

[주된 문제점]

-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활동은 현상 유지 수준에 불과함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부재 또는 컴플라이언스 재점검 프로세스 부재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미흡

[개선 방향]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 안전보건 인력 관련 R&R 재정립, 필요시 인력 충원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재점검을 통한 적절성 검토 필요
- 사전 컴플라이언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수립 필요

안전·보건 주요 영역 범주화

1	안전보건관리체제 - 조직, 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및 직무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 여부
2	산업재해 발생 관련 의무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 산업재해의 기록 여부 - 재발방지대책 수립
3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채용 시, 정기, 작업내용 변경 시 및 특별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주요 영역 범주화

4	위험관리 및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 위험기계·기구 검사 여부 - 유해·위험 요인 관련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적정성 평가 여부
5	근로자의 보건관리 - 건강진단, MSDS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여부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사후조치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게시·비치, 경고표시 여부 및 관련 교육 여부 - 유해물질 관리 여부
6	안전보건상의 조치	-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구비 여부 -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 기계·기구 기타 설비 위험 예방조치 여부 -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 위험 방지 여부 - 전기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여부

추가 고려 사항 - 경영책임자 등 범위

구분	주요 점검 지표	평가근거	
		설명 및 관련 자료	
A. 경영책임자 등 범위	- (A-1) 회사 조직도, 안전보건조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 (A-2) 안전 보건 관련 최고 책임자(이하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 (A-3) 안전 보건 최고 책임자의 역할과 권한(최종적인 의사결정/전결권 유무 포함)은 어떻게 되는지?		
	- (A-4) 안전 보건 최고 책임자가 관할하는 조직 및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 (A-5) 안전 보건 관련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단계별 보고 방식과 그 수준은 어떠한지?		
	- (A-6) 안전 보건 최고 책임자보다 상위자가 있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A-7) 안전 보건 규정상의 R&R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고려 사항 - 보호대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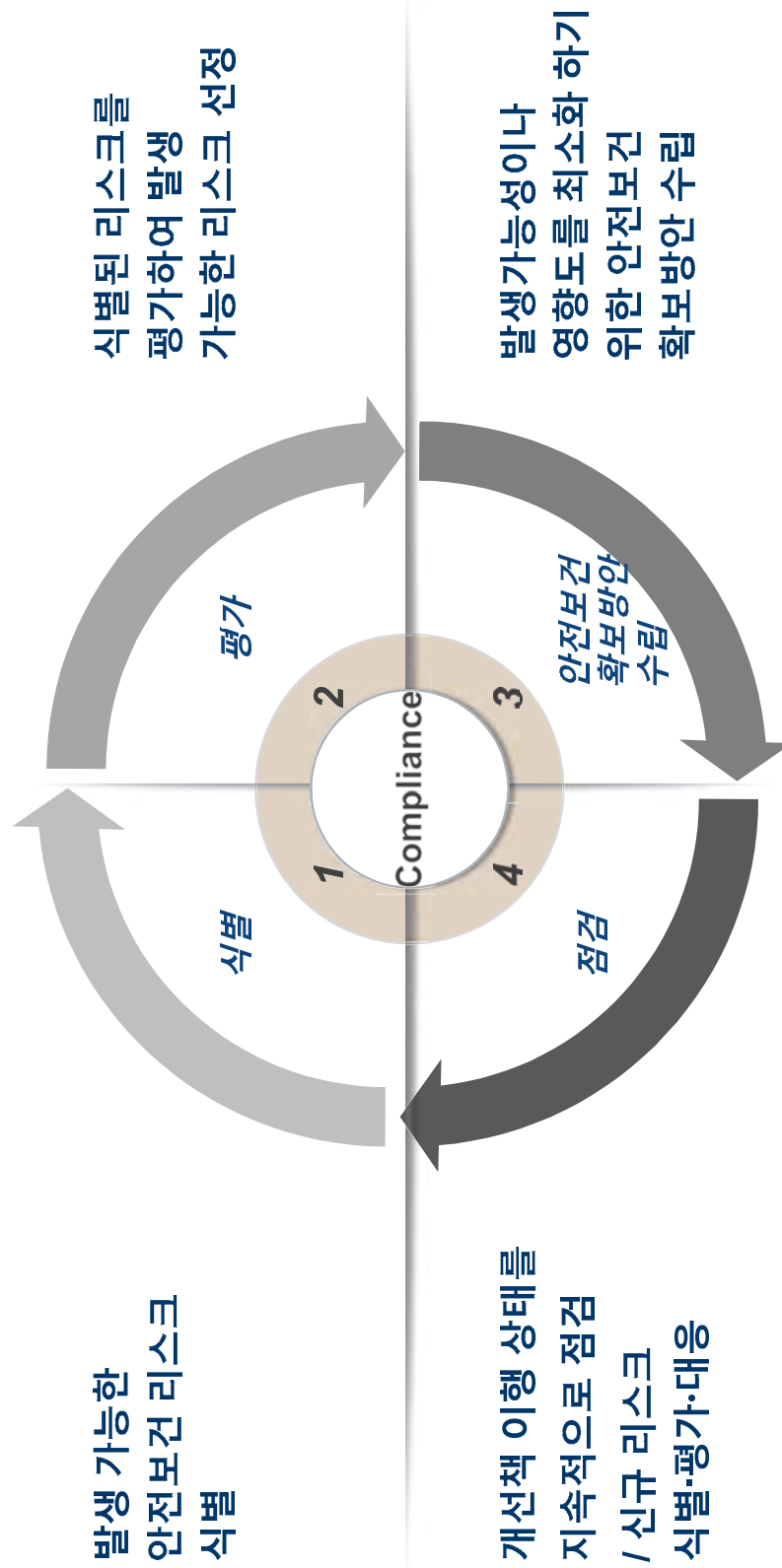
구분	주요 점검 지표	평가 근거	
		성명	직명 및 관련 자료
B.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범위	- (항1)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관련 조항의 이행(안전 조치)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여부? 이렇게 되나?		
	- (항2) 회사가 수급업체 등의 전제적인 업무 진행 과정에서 관여하는 분야 및 그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항3) 불허 안전보건 관련 회사가 수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활동 및 관리 관련 것이 있는지?		
	- (항4) 수급업체 등에 불허 안전보건 조치가 있는지? 안전보건 관련 사용하고 있는 활동 및 관리 관련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항5) 수급업체 등에 불허 안전보건 조치가 있는지? 안전보건 관련 사용하고 있는 활동 및 관리 관련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항6) 수급업체 등에 불허 안전보건 조치가 있는지? 안전보건 관련 사용하고 있는 활동 및 관리 관련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항7) 수급업체 등에 불허 안전보건 조치가 있는지? 안전보건 관련 사용하고 있는 활동 및 관리 관련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항8) 수급업체 등에 불허 안전보건 조치가 있는지? 안전보건 관련 사용하고 있는 활동 및 관리 관련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급/용역/위탁	인원	직업 장소	직업 내용	위험요소	안전보건법 이행 여부	안전보건 정보 제공	직업소 여부	안전보건 관리	비고(지배통영관리 기능성)
A	00명	서울시청	도청	주관	0	0	0	0	
B	00명	서울시청	시청내 수리	영향	X	X	X	X	
C	00명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개입	X	X	X	X	
D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E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F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G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H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I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J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K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L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M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N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O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P	00명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합계	000	서울시청	청사	주관	X	X	X	X	

컴플라이언스 수행 범위

- 1 법률/규정/제도/유해·위험요인 검토 컴플라이언스
- 2 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

컴플라이언스 수행 절차 4단계



리스크 식별 & 평가 - 법

법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및 관리 수준 현황 파악
- 법령상의 전반적 의무 포함된 Risk Pool 정립하고 리스크 식별/평가하여 주요 리스크 도출

분야	구분	내용	관련 법령	법적 제재	평가		
					발생 가능성	영향도	평가근거
도급	산업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해	- 작업장 순회 점검					
	예방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조치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 정기/수시 안전 및 보건 점검					

— 작업 범위, 보호대상의 범위, 안전보건조치의 내용 분류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 특성 및 실태에 맞는 Risk Pool을 정립하고 점검하여야 실질적인 효과 기대

리스크 식별 & 평가 – 유해·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요인

유해·위험 요인

- 공정/작업별 유해·위험 요인 파악
- 공정/작업별 관리체계·수준 파악 및 적절성 검토

Check Point

- 최소단위 점점별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 위험성 평가의 결과 기록 및 업데이트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 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이 적시에 이루어 지고, 재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 위험성 평가에 작업자가 참여하고 작업자가 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 공정/작업별 안전 점검, 안전 교육 등은 유해·위험 요인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수준은 적절한지?

[참고] 리스크 식별 & 평가 TOOL 도출 방안

사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락/붕괴, 폭발/화재/위험물

추락/붕괴, 폭발/화재/위험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3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조치

[illegible]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사영아저버거)

주요 점검 사항, 범칙 인지 기준

[illegible]

사업아전보건공단 각종 매뉴얼

영종별, 기계/기구별, 유해·위험
요인별 준수 사항 및 체크리스트

**업종별, 기계/기구별, 유해·위험
요인별 준수 사항 및 체크리스트**

[참고] 리스크 식별 & 평가 TOOL 도출 방안

순번	구분	상세정보	관련 법령	법적 제재	답변 예시
5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대표경영임원을 포함한다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고려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2.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3. 안전·보건관리 체계·인력 및 역할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시행령 : 2021. 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회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55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의 사업장: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귀사는 위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용에 이르게 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위험 예방을 위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도급 없음)
56	제9조 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안전·보건업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1. 사용자 1명 이상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안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인 또는 기관 1. 사용자 1명 이상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예 아니오

리스크 식별 & 평가 - 규정 등

규정

- 안전보건 규정/절차서/매뉴얼 등의 적법성 및 정합성 검토

Check Point

- Type 1 : 공정/작업 특성(유해·위험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 Type 2 : 법령과 배치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규정은 없는지?
- Type 3 : 누락된 법령의 주요 규정은 없는지?
- Type 4 : 역할, 책임 및 권한이 명확한지?
- Type 5 : 규정간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안전보건확보 방안 수립

1 도출된 주요 리스크에 적합한 개선방안 도출

- 예)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설계 보완, 방호조치 추가, 작업행동절차 등 업무프로세스 변경, 안전보호구 추가/변경
- 내부적인 점검 결과도 중요하지만, 외부 기관의 안전 진단 등을 통한 크로스 체크 필요

2 규정/작업표준/절차서/매뉴얼 재정립

- 절차서, 작업계획서 등에 사고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방지대책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하였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됨

3 임직원에게 대한 정기/특별 교육 실시

4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

5 동종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정립

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 - 점검

1 산업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축

- 업무 R&R와 담당 조직을 점검하고, 업무 R&R 재정립 및 컴플라이언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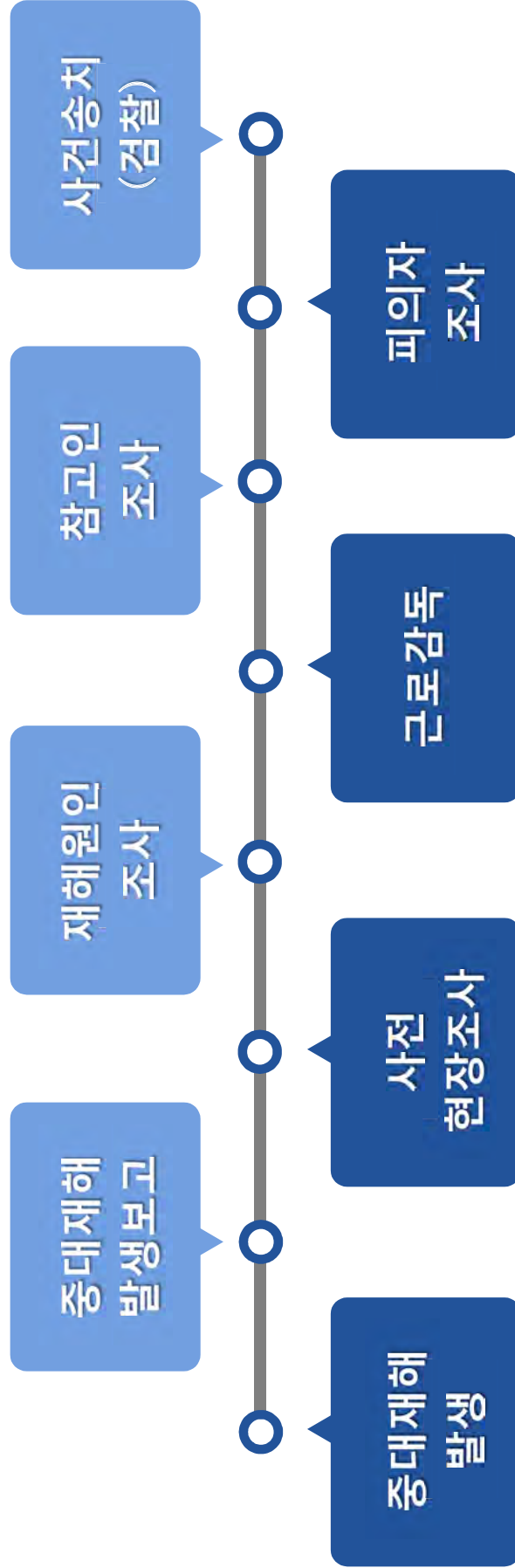
2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 경영책임자 보고 체계 확립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안전보건활동 관련 내역 보고
- 모든 항목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경영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후 문서화하여 기록

외부 기관을 이용한 시스템 점검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수립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수립

- 1 사고 현장 보존
- 2 사고상황과 내용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사고발생 신고
- 3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쟁점, 입장 정리 (조사기관/언론 등)
- 4 작업중지기간 최소화
- 5 유족 및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발생 가능한 절차별 해야 할 업무, 업무별 담당자 선정 및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 유사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수립 필요

1 "유해·위험 요인" 정의 및 요인별 점검/개선 활동

2 안전보건 제반 "규정 정비"

3 위 사항이 실제 작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수시 교육/점검"

4 모든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는 철저히 "문서화하여 기록"

5 업무 R&R 재정립 등 안전보건 "조직 정비 및 보고체계 확립"

업역 개편

국토교통부
김석원 건설정책과 사무관



PF Profile



김석원
행정사무관

Tel: +82-44-201-3514
C.P: +82-10-6415-4258
E-mail: ksw2@korea.kr

Professional Experience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관 (현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Representative Matters

건설산업기본법 해설(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제도(국토교통인재개발원)
건설업역 개편 특강(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석사과정)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 건설업역 개편을 중심으로 -

2021. 4. 8

김 석 원 사무관

(국토교통부)

목 차

I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II

업역개편 주요내용

I . 건설사업기본법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 기본이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

일부 조문에 한정된 특별법적 성격

* (법 제4조)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산법을 적용하되,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건산법 우선 적용

용어의 정의

- ▶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건축, 산업환경, 조정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 다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비포함
 - ※ 건설공사에 포함된 단순한 재료의 공급업무, 기계기구의 공급업무, 단순한 노무제공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시행령 별표 1 비교1)
 - 다만,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업자에게 하는 경우는 전체를 건설공사로 봄
- ▶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급인으로서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하는 자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 포함)
- ▶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는 자

용어의 정의

- ▶ 「도급」이란 명칭(원도급, 하도급, 위탁)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과,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함
- ▶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함

II. 업무개선 주요내용

II. 업역 개편 주요 내용

1. 업역체계 개편 현황(법 제16조 및 제29조) >> 시행: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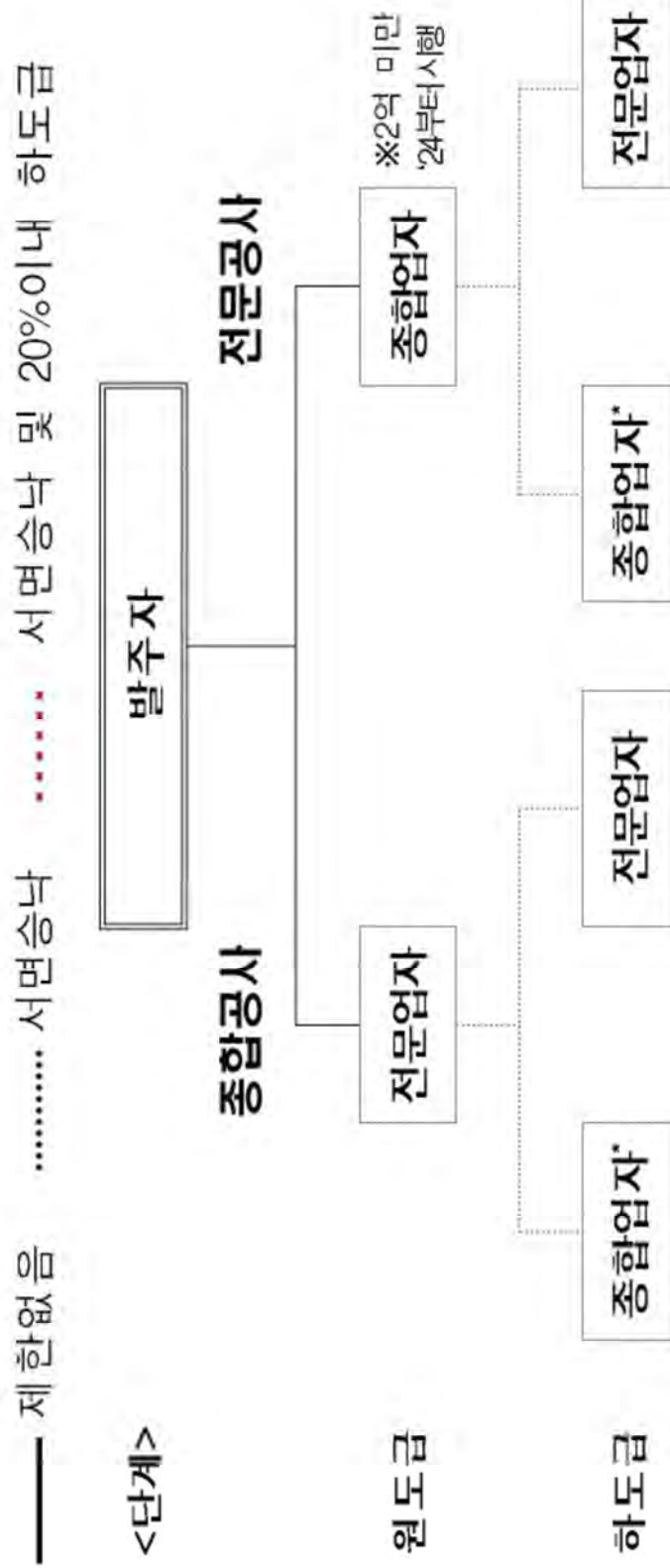
① 본(本) 업역 도급시 : 최대 3단계



*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II. 업역 개편 주요 내용

② 상대업역 도급시 : 최대 2단계



*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II. 업역 개편 주요 내용

2.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16조제1항)

원칙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제1항)

예외

다음의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 가능

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원도급 가능한 경우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제1항제1호)
- 2인 이상의 전문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도급받는 경우(제1항제3호)

* 전문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공사 원도급 참여는 '24. 1. 1.부터 허용 (부칙 제1조제3항)

②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도급 가능한 경우

- 종합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허용 (제1항제4호)
-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 1. 1.부터 허용 (부칙 제1조제4항)

II. 업역 개편 주요 내용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하는 경우(제1항제2호)
- ☞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 참여 가능

3.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법 제16조제3항)

>>시행일: 공공공사'21. 1. 1, 민간공사'22. 1. 1

- **상대 업역 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수의계약: 계약체결 전)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 다만, 2개 업종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

II. 업역 개편 주요 내용

4. 하도급 제도 개편 (법 제29조) >> 시행일 :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① 일괄하도급 금지(제1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 전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 다만, 수급인이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 전문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 하는 경우
-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해지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건설업체 포함)에 대한 하도급 제한 (제2항)

- 다만, ㉢ 발주자 서면 승낙 및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하도급 가능
- *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의 20%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 · 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 제한 (제5항)

- ㉤ 발주자 서면 승낙 및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가능

II. 업역 개편 주요 내용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에 대한 하도급 (제2항, 제4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의 해당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에 대해 하도급 가능**
- 다만,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전문업체를 포함)받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⑤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제한(제3항)

- 종합건설사업자가 재하도급 가능한 경우 : 하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 전문건설사업자가 재하도급 가능한 경우 : ㉠수급인의 서면 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하도급 가능

⑥ 하도급 통보 대상(제6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
- 전문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서면 승낙한 수급인

* 하도급 통보 예외 : 발주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것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협찬 회원

Sponsors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범씨엠건축사사무소

(주)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고객가치와 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고객감동

무영CM

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무영CM은 '건축물의 품질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객감동 강령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적 무영CM 비전 및 전략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2021 경영전략과 목표달성을 향한 로드 맵을 구체화하여 전격적으로 접근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무영씨엔건축사사무소

서울 | 서울시 송파구 동래로 109 (가림동) 대동빌딩 14/15층 TEL. 02-2199-3700 FAX 02-565-6657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5층 501호(여수동, 피타옌스타원) www.mooyoungcm.com

Providing Excellence

범CM은 다양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에 대한
기획단계에서부터의 시공관리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One-Stop PCM Service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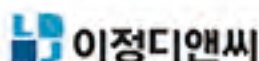
주요서비스 소개



계열사 및 글로벌 파트너 소개



- 사우디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OQ와 범CM의
합작 투자로 2019년 12월 설립



- 범CM의 시공법인(건축공사업)



- 1977년 설립된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
(미국 South Carolina 본사)
- 2004년 중국 진출(상하이 본사) / 해마다의 설계 우수
- 북경 유니버시티시티, 상해 디즈니랜드, 선전
레고랜드 등 수임



- 데이터센터 건설사업 분야 Global Leader
- 최초의 건축 Tier III 인증 및 최초의 거점시장에
대한 Tier IV 인증사설의 설계사
- 전 세계 450개 사무소, 2만명이 넘는 전문인력 보유



주식회사 범씨엠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A동 1311호
T +82.2.6942.5100 F +82.2.6942.5114
E baumcm@baumcm.co.kr

2021 Innovative PM/CM AI Solution Seminar 건설사업관리 AI 자동화시스템 TCIC 세미나

RE-2021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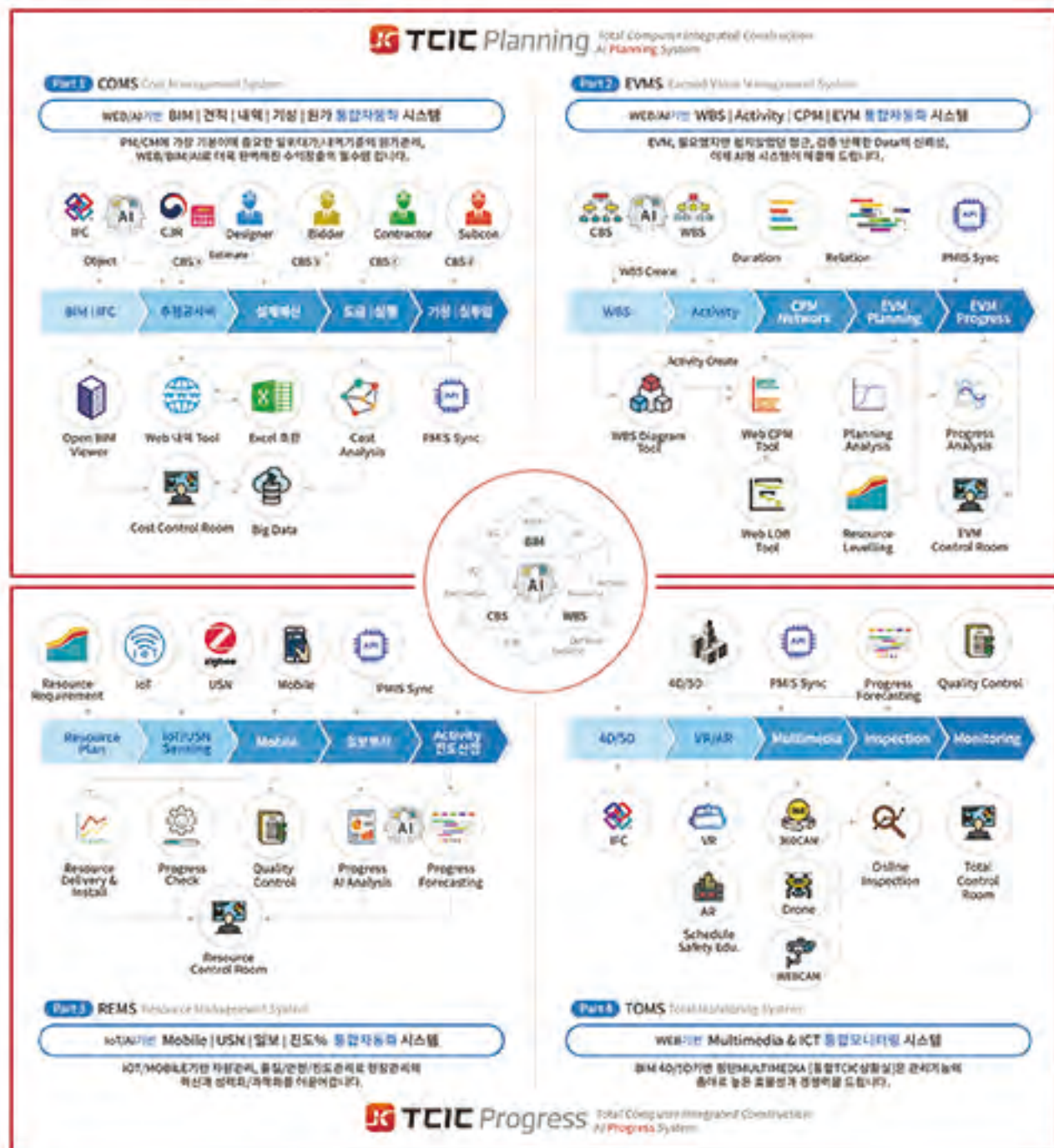
PM/CM을 위한 SangAh의 혁신적 [TCIC]시스템으로 건설경영의 도약을 예약하십시오!!

COVID19 수칙에 따라 사전예약 업체별 [개별방문 맞춤형 세미나]로 실시됩니다.

대상 건설 발주기관/기업, 종합건설사, CM/설계사

접수 2021년 4월1일~30일 (주)상아미래전략본부인사팀 전화신청 (☎ 02-3415-2222) 양호현 팀장 <https://pmis.sangah.com/seminar/seminar-apply.html>

진행 2021년 5월~6월 중 협의된 일자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SangAh

주식회사 상아 미래전략본부 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주)상아미래전략본부 TEL 02-3415-2222 www.sangah.com





경기도교육청 남부 신청사 건립사업CM



BUSAN OPERA HOUSE CM



JEJU MYTHS AND HISTORY THEME PARK J-DISTRICT CM



FARE ISOTOPE SCIENCE PROJECT CONSTRUCTION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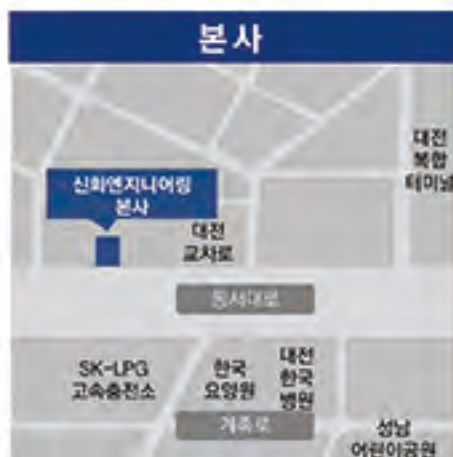


ARTSHOUSE ARCHITECTURAL DESIGN

국내 유일 종합건설기술용역 법인 신화엔지니어링

‘신화엔지니어링 세종사무소’와 함께
글로벌 종합엔지니어링으로 도약하겠습니다.

36년 역사의 신화엔지니어링은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CM | 건축설계 | 토목 | 전기 · 통신 | 기계 · 소방 | 에너지 · 온실가스검증 | 품질검사 | 시설물유지관리까지
고객의 꿈을 실현해 드리기 위해 최상의 토달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59 (용전동)

042.670.3114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영빌딩은 1515호

02.6951.3071



세종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B 401호

044.863.6656

대한민국
건설사업관리(CM)의 시작 그리고
고객과 마주한 26년의 시간과 1,100여개의 프로젝트
건설사업의 시작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 단계는 물론
준공 후 5년 사후관리까지

26년 X 1,100여개
전인CM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새로운 기준 제시, 전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인CM의 주요실적

양지파인리조트(국내 최초 민간 CM 프로젝트) | 상암 MBC 신사옥 | 논현동 하림타워 | CJ BLOSSOM PARK | GC녹십자 종합연구소
WBC The Palace | 더샵 센트럴파크II | 체이지우드 동천 호텔 | 적니클라우스 골프클럽관리아 | 스타필드 시티 위례/부천 | 현대시티아울렛 가산
셀트리온 오창 GMP공장 | 녹십자 오창 GMP공장 | 이이프로젠 오송 cGMP공장 | HK이노엔 수혁신공장 | 대웅제약 오송 cGMP공장
쿠방 금왕물류센터 | 신세계 허브 로지스틱 센터 | 산하로지스틱스파크 | 이천 동산물류센터 | 차산리MQ 물류센터 외 다수

건설사업관리·감리·CM형감리·리모델링·인테리어·PM·QS·BI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0(미래에셋타워 A동 17F) TEL. 02-552-0025 FAX. 02-552-9393 www.jeonincm.com

3.1빌딩 리모델링 : 설계 및 CM 수행

CM

건축설계

PM

도시설계

건축사업 및 전략수립



JUNGLIM INTEGRATED DESIGN

정림건축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풍부한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설계 및 전문 CM사로서 개발기획 단계에서부터 건설사업관리(CM)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바른 건축문화 창달에 아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www.junglim.com / TEL 02. 708. 8800

JUNGLIM CM



TOPEC

WE BUILD A BETTER FUTURE

토펙엔지니어링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WWW.TOP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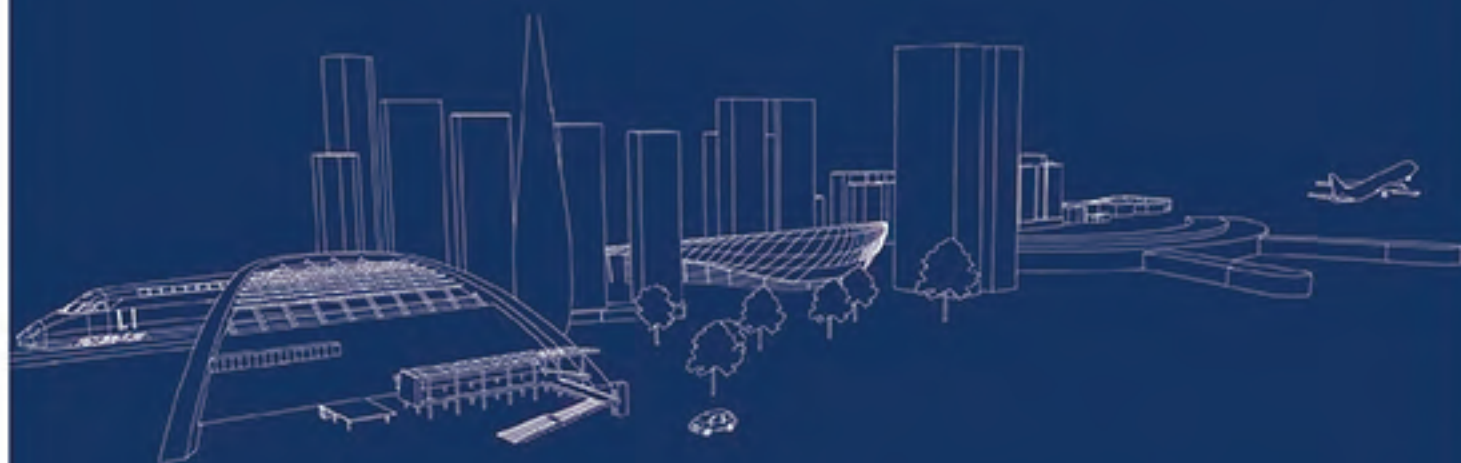
TOPEC

토펙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29(도곡동) / 전화 : 02-6959-0893 / 팩스 : 02-572-3581
 토펙건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0길 14(도곡동) / 전화 : 070-7609-4351 / 팩스 : 02-577-7379
 토펙종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노형동) / 전화 : 070-7609-4030 / 팩스 : 064-711-9901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헤원까지CM은 특화된 전문고급인력과 기술, 노하우로 창의적인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와 기술, 원칙과 신리를 중시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더 높은 삶의 가치를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주|헤원까지종합건축사사무소
 C M 부 문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개발 | 컨설팅 | 해외법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66, 7층(논현동) T.02-591-0071

Seoul | Baku | Beijing | Budapest | Dhaka | Doha | Erbil | Hanoi | Ho Chi Minh | New York | Nur-Sultan | Phnom Penh | Tashkent

heerim

Architects & Planners

국내 최고의 설계와 CM

완벽한

DCM service
Design + Construction Management

오직 희림만이 가능합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 올림픽스타디움

2018-2019 UEFA 유로파리그 결승 경기장

2015 ENR Global Best Project - Sports/Entertainment

ACEC New York 2016 Engineering Excellence Gala - Diamond Award - Structural Systems

2016 World Stadium Congress Award

FDIC Awards of Merit 2016

아제르바이잔 세운공사공수지원공사 |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 부산 영화의 전당 | 단교 일파동시티 | 넷마블 사옥 G-Tower | 삼성 하노이 R&D Campus



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39 T. 02 3410 9000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www.heerim.com



제9회 CM서울포럼

The 11th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Day
The 9th CM Seoul Forum

-
- 발행인 : 배 영 휘
 - 발행처 : 한국CM협회
 - 발행일 : 2021. 4. 8.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 전 화 : 02-585-7092
 - 팩 스 : 02-585-2689